

일련번호	1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다과(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징계 ·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잘못된 입찰참가자격 공고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 소홀 등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다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징 계 대 상 자 가과 □급 A

징 계 종 류 경징계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등에 따라 “○○○ 설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 이라 한다)” 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여 [표 1]과 같이 □□기업(이하 “계약자” 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남양주시 구 라과1)(이하 “라과” 라 한다)는 위 계약 과정에서 입찰참가자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가과로 통보하였다.

#### [표 1] 계약 체결 현황 “생략”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의 참가자격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

1) 2022●. ■. ▲. 행정기구 개편으로 라에서 다과로 업무 이관

칙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sup>2)</sup>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55호)」(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이 2023. 5. 23. 개정·시행되면서 [표 2]와 같이 경쟁제품인 “학습교구”의 세부품명이 “실물모형”에서 “실물모형및전시물”로 변경되었고 기존에 “실물모형”에 포함되었던 “●●” 항목은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삭제되었다.

### [표 2] “학습교구”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변경내역 “생략”

따라서 가과는 이 사건 용역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맞게 입찰참가자격을 정하여야 하고, 입찰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가과와 라과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00

### 가. 잘못된 입찰참가자격 공고

가과는 이 사건 용역의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격에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세부품명 번호 10자리: 601098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 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 필수특이사항: ●●)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등을 기재한 후 202●. ▲. ■. 나라장터(G2B)에 게시하였다.

그런데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개정으로 모든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

2)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기간이 2023. 5. 23. 만료된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입찰참가자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 입찰공고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인데도 가과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취소하지 않았고, 202●. ■. ▲. 계약자와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잘못된 입찰참가자격 공고로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나. 입찰참가자격 확인 소홀

가과는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을 확인<sup>3)</sup>하였다면 “●●”의 자격요건은 충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그림]과 같이 계약자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림] 계약자 직접생산확인 이력 “생략”

또한 라과는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확인하면 “●●”의 자격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특히 계약자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후 202●. ■. ▲. 가과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 결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공계약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업무 담당자 등의 부당한 업무 처리

가과 ◇◇팀 A는 202●. ■. ▲.부터 감사일 현재(2024. 10. 2., 이하 생략)까지 ■■ 업무를, 라과 ▲▲팀 B는 202●. ■.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업무를 담당하였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제품 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다.

#### 가. A의 경우

위 사람은 ◇◇로서 입찰공고문의 입찰참가자자격을 정확히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격이 잘못될 경우 원래의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3항 가”와 같이 입찰공고문을 잘못 작성하고 잘못된 입찰공고를 취소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3항 나”와 같이 입찰참가자의 참가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3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나. B의 경우

위 사람은 입찰참가자격 서류 접수 및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사업담당자로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3항 나”와 같이 입찰참가자의 참가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3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결과를 인정하면서 담당자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가 미숙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숙지를 통해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과는 관련 고시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였고 입찰참가자격 확인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경쟁입찰참가등록증만 보고 판단하였던 사항으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가과 A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입찰참가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아래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 입찰참가자에 대한 자격 확인을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남양주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계약 업무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고 정당한 입찰공고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2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징계 · 주의요구

제 목 “○○○ 구입” 계약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징 계 대 상 자 가과 □급 A  
징 계 종 류 경징계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등에 따라 [표]와 같이 “○○○ 구입” (이하 “관급자재 구입” 이라 한다) 계약 업무를 처리하였다.

#### [표] 계약 체결 현황 “생략”

### 2.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의 참가자격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물품을 조달하려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2억 1천만 원<sup>4)</sup> 미만인 물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 등으로 제한하려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의 추정가격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비교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경쟁입찰을 추진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2●. ▲. ■. 나라장터(G2B)에 관급자재 구입 공고문(남양주시 공고 제202◇ ◇◇◇◇-◆◆호)을 작성·게시하면서 해당 물품의 추정가격이 약 2억 6천 4백만 원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데도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그 결과 다수 업체에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는 등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입찰참가자격 없는 업체와 물품 구매계약 체결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조달청의 계약법규 관련 해석<sup>5)</sup>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입찰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9호), 2021. 1. 1. 시행」 규정 적용

5) 조달청 법령해석(1601210052)에 따르면 입찰공고문에 낙찰하한율을 잘못 표기하여 잘못된 낙찰하한율로 개찰완료된 경우 정당한 낙찰하한율로 투찰한 업체가 1순위인지, 입찰공고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음

따라서 가과는 입찰참가자에 대해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인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했으며, 개찰 또는 적격심사 시, 최종 계약체결 전이라도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인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관급자재 구입 계약을 추진하면서 적격심사 전 입찰 1순위 업체인 □□기업으로부터 중기업으로 명시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2021. 4. 1. ~ 2022. 3. 31.)를 제출받았고,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직접 작성·게시하였으므로 동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기업과 202●. ▲. ■. 2억 8천 9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가과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다수 업체에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는 등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업무 담당자 등의 부당한 업무 처리

가과 ◇◇팀 A는 202▲. ●. ■.부터 감사일 현재(2024. 10. 2.)까지 ○○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사람은 ■■로서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경쟁입찰을 추진하여야 하고, 입찰참가자에 대한 자격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2항 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였고, “3항 나”와 같이 입찰참가자에 대한 자격 확인을 소홀히 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 업체와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2항” 및 “3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결과를 인정하면서 중·소기업이 모두 입찰에 참여하도록 공고하려고 하였으나, 공고문을 잘못 작성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참여를 제한하여 공고한 사안으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가과 A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입찰참가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아래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 앞으로, 계약 업무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하고, 입찰참가자의 자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3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읍 가과(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소지 업체와 물품구매 계약 체결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읍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읍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등에 따라 [표]와 같이 “□□□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 [표] 계약 체결 현황 “생략”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의 참가자격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 ▲. ■. 가과에서 나라장터(G2B)에 작성·공고한 “□□□ 구입” (남양주시 가읍 공고 제202●-▲▲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조립식구조물, 세부품명번호: 3020179601)를 소지한 업체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입찰 참여업체에 대해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인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했으며, 적격심사 시 또는 최종 계약체결 전이라도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인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 구입” 계약을 추진하면서 입찰 결과 1순위 업체인 □□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조립식구조물)를 소지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위 업체와 202▲. ●. ■. 148,308천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기업에 부당한 특혜를 주게 되었으며 정당한 자격을 보유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수의 업체는 입찰 경쟁기회를 잃게 되었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입찰참가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남양주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계약업무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여 입찰참가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4	감사자	☆급 〇〇〇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〇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가읍 다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낙찰하한율을 잘못 적용한 용역계약 체결**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가읍 다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와 가읍 다과(이하 “다과” 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의계약(견적제출) 업무를 처리하였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제3절-1.-나. 수의계약 요령-9)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와 다과는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의 수의계약은 낙찰하한율<sup>6)</sup> 88%를 적용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낙찰하한율 90%를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업체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6)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매일경제)]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1]과 같이 202●. ▲. ■.부터 202▲. ●. ■.까지 나라장터(G2B)에 “남양주시 ○○○용역” 등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8건의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면서 낙찰하한율을 90%가 아닌 88%로 잘못 작성하였다.

#### [표 1] 가과 수의계약 체결현황 “생략”

이에 따라 “남양주시 ○○○용역” 등 [표 1] 연번 1번부터 6번까지 6개 용역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의 견적가격을 제시한 참여업체가 없으므로 정당하게 낙찰하한율을 90% 이상으로 적용하였다면 모두 유찰되었어야 하는데도, 가과는 투찰률 90% 미만인 □□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표 1] 연번 7번, 8번의 “□□ 감리용역” 과 “△△ 실시설계용역” 등 2개 용역계약의 경우 ○○기업 등 투찰률 90% 이상인 참여업체가 있었는데도 투찰률 90% 미만인 ■■기업(89.239%) 및 ●●기업(88.063%)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다과는 [표 2]와 같이 추정가격이 86,674천 원인 “◎◎ 정비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면서 낙찰하한율을 88%가 아닌 87.745%로 잘못 작성하였다.

#### [표 2] 다과 수의계약 체결현황 “생략”

이에 따라 투찰률 88% 이상인 ◆◆기업 등 다수업체가 탈락하였고 다과는 투찰률이 88% 미만인 ◇◇기업(87.857%)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계약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 등 2개 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낙찰하한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남양주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낙찰하한율을 잘못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5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과 (다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통보

**제 목** 남양주시 공공도서관장 임용 직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다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남양주시 조직 및 공무원 정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남양주시 나과(이하 “나과” 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규채용, 전보 등 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도서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26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 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도서관 1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도서관<sup>7)</sup>을 제외한 12개소는 모두 남양주시 라과(이하 “라과” 라 한다) 소속 12개 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남양주행정기구규칙” 이라 한다) 제4조 및 [별

7) ○○○○○○○○도서관은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4조의5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7)은 라과의 분장 사무로 관할도서관 도서의 수서 및 정리,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연구·조사·협조,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관리,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 도서관 근무인력 복무 관리,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는 남양주시 공공도서관장에 해당하는 라과장에 「도서관법」 제34조의 취지에 맞게 사서직만 임명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 관련 자치법규를 관리·정비하여야 하고, 나과는 라과장을 새로 임명하는 경우 사서직 공무원을 전보 또는 승진 임용하거나, 사서 자격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을 외부에서 충원하는 등 「도서관법」 제34조의 취지에 맞게 인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남양주시 공공도서관장에 사서직이 아닌 직렬이 임명될 수 없는데도 [표 1]과 같이 남양주행정기구규칙 제3조 제1항 및 [별표 1] “시 본청의 실·국장 등의 직급(제3조 관련)” 에 라과장의 임용 직급으로 지방사서사무관 이외에 지방▣사무관을 같이 규정하는 등 자치법규의 관리·정비를 소홀히 하였다.

#### [표 1] 라과장(남양주시 공공도서관장) 임용 직급 “생략”

그리고 나과는 남양주시 공공도서관장에 사서직이 아닌 직렬이 임명될 수 없는데도 최근 ○년 간 [표 2]과 같이 단 1차례(20■■■. ■■■. ■■■. ~ 20■■■. ■■■. ■■■. / 지방사서사무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방▣사무관을 라과장으로 임용하는 등 「도서관법」 제34조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 [표 2] 최근 ○년 간 라과장(남양주시 공공도서관장) 임용 내역 “생략”

그 결과 도서관장에 사서직이 아닌 직렬이 임용되어 「도서관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인사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라과장 직위 정원을 사서직 단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개별 법령에서 정한 직렬, 자격기준 등을 숙지하여 반영하는 등 조직 및 정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과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 등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앞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직 및 공무원 정원 관리, 인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도서관법」에 명시된 직렬과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공공도서관장 임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6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화물자동차 차고지 임차기간 경과 미확인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제7항 제2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sup>1)</sup>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에 따르면 차고는 자기 소유이어야 하지만,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 임차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전용 사용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에 관한 권한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등에 따라 남양주시장에게 재위임되었다.

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도·점검 시 차고지설치확인서 등을 통해 차고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우선 점검해야 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차기간 만료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임대차계약 갱신, 신규 계약 체결, 자기 소유 차고지 증빙 등이 별도로 없다면 사업전부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별지의 [별표] “화물자동차 차고지 임차기간 경과 내역(20■■■~20■■■년)” 과 같이 차고지 임차기간이 경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운송사업자가 총 ●곳에 이르렀는데도 이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고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관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리가 허술하고, 불법 밤샘주차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심을 초래하였다.

다만, 가과는 감사기간 중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운송사업자 ●곳 중 ◇곳에서 임차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차고지설치확인서를 제출받아 차고지 기준을 다시 충족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임차기간 연장 등을 증명하지 못한 나머지 ○곳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2024. ■■■. ■■■.)를 하는 등 처분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업무 특성상 1인당 업무량이 많고 타 시·군에 차고지를 설치한 경우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건 이상의 차고지설치확인서를 확인하여 재정비하였으며 앞으로 화물자동차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앞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차고지 임차기간 연장 등을 증명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지]

[별표] 화물자동차 차고지 임차기간 경과 내역(20■■■~20■■■년) “생략”

일련번호	7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주의요구

**제 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 및 임시운행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sup>1)</sup>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이하 “임시번호판등” 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번호판등을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반납받은 임시번호판등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2호는

1)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번호판 교부와 반납,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등에 따라 남양주시장에게 위임되었다.

임시번호판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5일 이내에 임시번호판등을 반납받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기하여야 하고, 임시번호판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와 같이 최근 ○년간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시번호판등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가 총 ◎건에 이르렀는데도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표] 최근 ○년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미반납 현황 “생략”

그 결과 미등록 자동차의 운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연구·개발, 신규검사·등록 등의 제한된 사유가 있는 경우 한정된 기간에만 운영을 허용하는 임시운행허가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가과는 감사기간 중 적극적으로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임시번호판등을 제대로 반납하지 않은 ◎건 모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sup>2)</sup>한 바 있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남양주시에서 발급한 임시번호판등을 다른 시·군에서도 반납을 받고 있어 임시번호판등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임시번호판등의 반납을 전제로 지연된 기간 만큼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무 관행상 미반납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미흡했던 부분을 시정할 수 있었으며, 추후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등을 철저히 하여 관계 법령에 맞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가과는 2024. ■■■.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 임시번호판을 미반납한 것으로 표시되는 ◇건에 대하여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였고, 소명자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반납 확인 협조 등을 통해 ◆건은 반납을 이미 완료한 것으로 최종 확인하였으며, 2024. ■■■. ■■■. 반납이 확인되지 않는 나머지 ◎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앞으로 위 감사결과 지적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 및 임시운행허가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8	감사자	☆급 〇〇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〇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과 (다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징계 ·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ㄱ용역 계약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다관)  
 징 계 대 상 자    라국 나과 〇급 A  
 징 계 종 류        경징계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와 남양주시 나과(이하 “나과” 라 한다)는 관내 ○ ○ · ○ ○ ○ ○ ○ 탐승 시 만 ●세 이상 ○ ○ ○ 대상 ○ ○ ○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 진흥 법」에 따라 [표 1]과 같이 ㄱ용역(이하 “ㄱ용역” 이라 한다) 계약 업무를 수행하였다.

#### [표 1] ㄱ용역 계약 체결 현황 “생략”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 주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장관” 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sup>3)</sup>하는 사업 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5항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로 제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기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은 사업비 40억 원 미만 사업 참여 불가

고 되어 있다.

또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이하 “중소사업자 참여 지침”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에는 국제경쟁에 대응하여 시급하게 보급·확산할 필요가 있는 신기술 등을 적용한 사업으로 기술적·관리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 참여 지침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있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시행 전년도 12월말까지 인정요청서를 과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과기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ㄱ용역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중소기업자 참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어야 하고, 나과는 용역의 발주 금액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대기업인 경우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을 받았는지 확인한 후 계약하였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 가. 가과의 경우

가과는 관내 ●세 이상 ○○○에 대해 ○○○ 확대 지원을 위하여 20■. ■. ■. “ㄱ 계획”을 수립하였다.

ㄱ용역은 [그림]과 같이 만 ●세 이상 남양주 시민이 기존 전철·지하철 무임승차를 위해 발급받은 ◇◇카드<sup>4)</sup>를 사용하여 관내 ○○·○○○○까지 ○○ ○○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개발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었다.

[그림] 남양주 ○○○○ ○○시스템 개발 구성 “생략”

4) 경기도 나 업무를 “○○”과 “△△”가 공동 위·수탁하여 발급하는 수도권 ○○·○○○ ○○○○카드

이에 따라 가과는 계약을 추진하면서 [표 2]와 같은 협약에 의해 경기도 ○○정보 시스템<sup>5)</sup>과 ◇◇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sup>6)</sup>(이하 “□□”라 한다)가 ◇◇카드 운영의 독점 업체라는 사유만으로 중소기업자 참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 ■. ■. □□와의 계약을 나과에 의뢰하였다.

**[표 2] □□의 ㄱ용역 ◇◇관련 협약 현황 “생략”**

그러나 가과는 ㄱ용역의 사업비가 ●억 ●천만 원으로서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인데도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대기업에 해당하는 □□와 계약을 나과에 의뢰하였다.

**나. 나과의 경우**

나과는 “3항 가”와 같이 가과로부터 ㄱ용역의 계약을 요청받았으므로 계약 체결을 위한 자격요건 검토 시 계약업체가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에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이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총 사업비 ●억 ●천만 원인 ㄱ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확인이나 조치 없이 대기업에 해당하는 □□와 20■. ■. ■.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결**

그 결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모하고자 하는 관계 법령의 취지를 저해하였다.

**4. 업무 담당자 등의 부당한 업무 처리**

가과 ○팀 B는 20■. ■. ■.부터 20■. ■. ■.까지 ㄱ용역 업무를, ○팀장 C은 20

5) “ㄷ”과 “ㄹ”으로 구성되며 “ㄷ”은 경기도 ○○○○, ○○○○, ○○○○ 차량에 ○○○○ 징수 및 ○○정보 수집을 위해 설치한 ○○○○단말기와 ○○○○장치, ○○정산시스템 등의 전산장비를 의미하고, “ㄹ”은 ○○○○정보, ○○정보 등 원시정보를 수집, 연계하는 ○○○○단말기, △△ H/W 및 S/W 등 시스템을 말함  
 6) 20■. ■. ■. “△△”에서 “□□”로 사명 변경

■. ■. ■.부터 20■. ■. ■.까지 ○팀 총괄 업무를, 나과 △팀 A는 20■. ■. ■.부터 20■. ■. ■.까지 용역계약 업무를, △팀장 D는 20■. ■. ■.부터 20■. ■. ■.까지 △팀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 가. B의 경우

위 사람은 사업 담당자로서 “3항 가” 와 같이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인데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대기업에 해당하는 □□와의 계약을 나과에 요청하였다.

그 결과 “3항 다” 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나. C의 경우

위 사람은 ○팀장으로서 사업 담당자가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으나 사업 담당자가 “3항 가” 와 같이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대기업과 계약을 추진하는데도 별도의 확인과 검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하였다.

그 결과 “3항 다” 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다. A의 경우

위 사람은 계약 담당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총 사업비 40억 원 이하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시 대기업의 사업참여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위 사람은 “3항 가” 와 같이 가과로부터 요청받은 계약업체와의 계약 건에 관하여 계약업체가 사업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3항 다” 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라. D의 경우

위 사람은 △팀장으로서 계약 담당자가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으나 계약 담당자가 “3항 나” 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대기업과 규정에 맞지 않게 계약을 체결하는데도 별도의 확인이나 검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하였다.

그 결과 “3항 다” 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 가. 가과의 경우

A는 ㄱ용역은 경기도 ◇◇◇◇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이며 대기업인 □□는 해당 ◇◇의 독점 회사로, 이미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타 지방자치단체가 □□와 수의계약한 사례를 참고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하였고,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ㄱ용역에 대기업인 사업자의 참여를 위해 중소기업자 참여 지침에 따라 예외사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타 지자체의 유사한 계약 사례를 답습하여 계약을 의뢰한 행위는 규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나과의 경우

A는 가과의 수의계약 협조 요청에 따라 업무의 성격과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용역 계약 영역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개별법이 있어 계약체결 과정에서 예외적인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여 이행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 용역 계약을 일괄 담당하는 자로서 사업부서의 계약 의뢰에 대해 법령과 지침의 적정성을 검토할 전문적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의 계약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대기업인지와 대기업인 사업자 참여를 위해 관련 절차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기에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적극행정 면책 판단

남양주시에서는 감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약자인 만 ●세 이상

○○들을 대상으로 ○○·○○○○ ○○○를 지원함으로 ○○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복지 정책 수행을 하였던 점을 근거로 20■. ■. ■. 경기도에 적극행정 면책심사를 신청하였다.

경기도는 면책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대기업 참여 제한 발주 금액의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한 방법·방식의 의도 및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면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위반하여 “ㄱ 계약”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나과 A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ㄱ용역에 대하여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과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아래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 ㄱ용역에 대하여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과 계약을 추진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아래 관계자와 차상급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남양주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진행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대기업의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등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9	감사자	○○○○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훈계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병가 사용 관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구 다과(이하 “다과”라 한다)<sup>7)</sup>는 병가 사용에 대한 복무 관련 사항 안내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남양주시 소속 직원들의 복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96호, 2022. 1. 1.) VIII.-4.-나.-(3).에 따르면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다과는 남양주시 소속 직원이 진단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병가를 6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7) 2020. 0. 0. 조직개편으로 다과에서 가과로 변경

20XX년 당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등이 수시로 변경되어 다수의 부서로부터 복무 관리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다과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96호, 2022. 1. 1.)가 아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69호, 2019. 4. 17.)<sup>8)</sup>를 근거로, [그림]과 같이 ‘코로나 19 확진을 사유로 격리통지서(문자)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신 경우 진단서 첨부 병가로 인정되어 해당 기간을 제외한 연간 병가 사용 일수가 6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단서 없이 병가 사용이 가능’ 하다고 20XX. XX. XX. 각 부서 서무 담당자에게 남양주시 메신저로 잘못 안내하였고, 20XX. XX. XX.이 되어서야 [그림]과 같이 ‘연도 내 전체 병가 사용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병가의 승인이 가능’ 하다고 정정하여 남양주시 새을 행정포털 게시판에 공지하였다.

한편, 별지의 [별표] “병가 6일 초과 사용자 중 진단서 미첨부 또는 부적정 증빙 서류 첨부 내역” 에서 20XX년 A 등 ○○명, 20XX년 B 등 ○○명은 당시 다과 소속 직원들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격리통지서(문자) 등을 첨부한 병가를 제외하고도 병가 사용 일수가 6일을 초과한 사실이 있고, 20XX. XX. XX. 이후에도 누적 병가 사용 일수가 6일을 초과하고도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진단서가 아닌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병원 예약 문자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맞지 않은 병가 사용이 인정되었다.

그 결과, 다과의 잘못된 병가 사용 안내에 따라 부당한 병가 사용이 인정되는 등 남양주시 소속 직원들이 병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그림] 코로나19 관련 복무 안내 메신저(20XX. XX. XX.) : “생략”**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다과는 20XX년 코로나19로 인한 병가 사용에 대한 규정 해석과 안내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당시는 코로나19 팬데믹(2020. 1. ~ 2023. 5.) 기간으로 복무부서에서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최우선 목표로 복무관리를 하던 시기였던 점, 남양주시 전직원의 방역근무

8) 제8장.-4.-나.-3).-가). :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함(2020. 1. 1. 개정으로 삭제)

편성과 지원을 총괄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의 업무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관련 복무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복무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남양주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병가 등 소속 직원의 복무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병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과, 증빙서류 및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소명이 불가능한 직원에 대하여 해당 일수만큼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환수하거나 연가일수를 공제하는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지]

[별표] 병가 6일 초과 사용자 중 진단서 미첨부 또는 부적정 증빙서류 첨부 내역

: “생략”

일련번호	10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장기요양기관 특정목적사업 예산 운용 지도·감독 소홀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노인복지법」 제42조 등에 따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고,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그 적립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7.-7.-9.-다. “환경개선준비금(또는 운영충당적립금)의 관리 등”에 따르면 특정목적사업 예산(환경개선충당금 및 운영충당적립금)은 시설 회계에서 세출 처리 후 이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시의 지도 점검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어야 하며 적립 시점으로부터 당초 적립목적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시 적립금액 전체에 대해 상시 현금화가 가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가입 시 예금주는 시설명으로 하여야 하며, 기존에 가입한 상품 중 예금주(수익자)가 개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설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을 적립할 경우 시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였는지, 시설 회계에서 세출 처리 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지, 특정목적사업 적립금은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지도·점검시 일반회계와 함께 확인하고, 사전보고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적립여부·규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조치를 하는 등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시설에서의 예·결산 보고에 대한 검토 및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여 [별지]의 [별표 1] “노인복지시설 특정목적사업 예산 운영 내역”과 같이 장기요양기관 ○개소에서 사전보고도 없이 ○건의 특정목적사업 예산 약 △△억 ○천만 원을 적립하고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별표 2] “노인복지시설 특정목적사업 예산의 보험형 상품 가입내역”과 같이 ◎◎ 등 ○개소에서 ○건의 특정목적사업 예산을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닌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하여 적립하고, □□과 ◇◇에서 가입 중인 ○건의 특정목적사업 적립금은 대표자 사망시 수혜자가 대표자 개인 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별표 3] “노인복지시설 특정목적사업 예산의 저축상품 내역”과 같이 △△

등 ○개소는 ○○건의 특정목적사업 적립금을 개인이나 법인 명의 통장 또는 운영비 통장에 적립하고 있는데도 가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관내 노인복지시설의 특정목적사업 예산의 적립 형태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감사일 기준(2024년 9월, 10월) 장기요양기관에서 적립목적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 해지 시 원금손실이 발생되고 적립금액 전체에 대해 상시 현금화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예산 낭비의 위험을 초래하였고, 상품 관련 혜택이 특정 개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등 특정목적사업 예산의 운용 취지가 훼손되었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장기요양기관 특정목적사업 예산 적립 시설에 대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인지하지 못하여 관리 및 점검이 소홀하였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 사전보고, 세출 등 특정목적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히 확인 및 지도 점검하여 특정목적사업 예산이 투명하게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앞으로, 관내 장기요양기관이 특정목적사업 예산을 적립 취지에 맞게 운용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에 따라 특정목적사업 예산을 적립하고 있는 시설로부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제출받은 뒤 각 시설에서 적립 목적에 맞게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가입하고 특정 개인 또는 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지]

[별표 1] 노인복지시설 특정목적사업 예산 운영 내역 “생략”

[별표 2] 노인복지시설 특정목적사업 예산의 보험형 상품 가입내역 “생략”

[별표 3] 노인복지시설 특정목적사업 예산의 저축상품 내역 “생략”

일련번호	11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다과, 라과, 마과, 바과, 사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훈계 · 시정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소홀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다과, 라과, 마과, 바과, 사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 다과, 라과, 마과, 바과(이하 “가과 등 5개 부서” 라 한다)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정민원인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검토하여 인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남양주시 사과(이하 “사과” 이라 한다)은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처리기간을 정하여 공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민원 처리 절차 위반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1)에 따르면 법정민원은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되어 있다.

민원처리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에 따른 처리기간은 5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 등 5개 부서는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청 서류를 민원실에 접수하고 관련 법령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기간 내 민원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등 5개 부서는 [표 1]과 같이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받고서는 민원실에 즉시 민원 접수를 하여야 하는데도, 부서 접수 처리만 하고 민원실 민원 접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지연 접수하였다.

또한 가과와 바과는 각각 2021. 11. ○○. ◎◎(이하 “◎◎” 라 한다)와 2023. 1. ○○. ◇◇로부터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받았는데도 처리기간 5일을 넘겨 민원을 처리하였다.

특히 가과는 2021. 11. ○○. ◎◎로부터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접수받은 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민원 처리를 거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자 민원인에게 구두로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민원 처리를 종결하였으며, 마과는 2023. 8. ○. ◆◆로부터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접수한 후 정관변경 신청 서류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불허가하면서 문서가 아닌 구두 통지로 민원을 종결 처리하였다.

#### [표 1]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부적정 처리 현황 “생략”

그 결과 가과 등 5개 부서는 민원처리법을 위반하여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 정관변경인가 부적정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목적사업의 범위가 도내에 한정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인가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III-2.-나 정관변경인가 시 검토사항에 따르면 정관변경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절차가 관계 법령, 정관 등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 「정관」 제51조에 따르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받으면 정관변경이 관계 법령과 정관 등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21. 11. ○○. 접수한 ○○ 정관변경인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면서 ○○에서 2021. 10. ○○. 개최한 2021년 제1차 총회 회의록에 총회원수 90명에 참석인원 50명으로 정관변경 시 필요한 의결정족수 10명이 부족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데도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오인하여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적절”로 내부 결재하였다.

이후 가과가 ○○의 정관변경 의결정족수가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인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는 ○○에 이 사실을 알렸고, ○○는 2021. 11. ○○. 가과에 다시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가과는 [그림]과 같이 재차 제출한 회의일정 등이 2021. 11. ○○. 당초 제출한 회의 일정과 동일하고, 참석 회원만 50명에서 62명으로 수정한 것을 알았는데도 회의를 다시 개최하라고 보완 요구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하지

않고 2021. 12. ○. 정관변경인가를 하였다.

#### [그림] ◎◎ 정관변경인가 신청 회의록 비교 “생략”

그 결과 정관변경인가의 법률상 요건인 총회 개최, 의결정족수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정관변경이 인가되어 행정의 신뢰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법정민원(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민원편람 편성 누락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민원처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남양주시 홈페이지 사전행정정보목록을 보면 남양주시 사과는 매년 1월 민원처리절차를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과는 남양주시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법정민원을 빠짐없이 파악하여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민원편람에 수록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사과는 감사대상기간(2021. 1. 1.~2024. 7. 31.) 동안 15건의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민원을 접수하였는데도 2024. 7. 26. 민원편람을 제작·게시하면서 법정민원 중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절차 공개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민원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민원 처리 절차 위반에 대해 가과, 라과, 마과, 바과는 향후 관련 법령 준수 및 지침 숙지를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다과는 신청서상 신청일은 2024. 3. 12.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신청서를 수령한 날은 2024. 3. 21.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수령일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가과는 ◎◎ 정관변경인가 부적정에 대해 향후 관련 법령 준수 및 지침 숙지를 통해서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민원편람 편성 누락에 대해 사과는 앞으로 접수된 법정 민원에 대해 민원편람 수록 여부를 적극 검토 후 처리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민원편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남양주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업무를 할 때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민원의 접수, 처리, 처리결과의 통지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 정관변경인가 신청 관련 ◎◎가 회의록을 임의로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앞으로 민원편람 제작 시 법정민원이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법정 민원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민원편람에 수록하고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12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0,549,00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다과, 라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정산 소홀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다과, 라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 다과, 라과(이하 “가과 등 3개 부서” 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 나.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II-2-다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따르면 계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 등 3개 부서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받고 이를 심사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보조금으로 적립한 퇴직적립금 등이 있을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 등 3개 부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시설 운영비)을 정산함에 있어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종사자에 대해 보조금으로 적립한 퇴직금이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반납조치를 누락하는 등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표]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종사자 ○○명에 대해 보조금으로 적립한 퇴직금 10,549,000원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까지 반납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까지 남아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표]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현황 “생략”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 등 3개 부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하여 반납 조치를 하지 않아 이후 미반납 시설에 반납요청 공문처리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퇴직적립금과 관련된 점검

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 정산 시 퇴직자 현황을 시설로부터 제출 받는 등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 ◎◎ 등 △개 시설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종사자 ○○명에 대해 보조금으로 지출했던 퇴직적립금 10,549,000원을 회수하여 반납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13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다과, 라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시정요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미실시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다과, 라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 다과, 라과(이하 “가과 등 3개 부서” 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노인복지법」 제42조, 「장애인복지법」 제61조, 「아동복지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sup>9)</sup>,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sup>10)</sup>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sup>11)</sup>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

9) 1. 미성년자

10)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

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7부터 제1호의 9에 해당되는 사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II.-2.-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에 따르면 시설장 및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유형별 시설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5항 및 제6조에 따르면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거나 취업자등으로부터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받아야 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

---

나지 아니한 사람

\* 1의7과 관련하여 “그 직무”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없는 직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법제처 해석 19-0491)

-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1)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취업자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거나 취업자등으로부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받아야 하고,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 및 제29조의4 제1항12)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거나 취업자등으로부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받아야 하고, 관할행정기관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 등 3개 부서는 소관 사회복지시설이 취업자등에 대하여 결격사유나 노인학대 등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채용하는지 관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취업자등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 등 3개 부서는 별지의 [별표] “사회복지시설 범죄경력 미조회 내역” 과 같이 ◎◎ 등 ▲▲▲개 시설에서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려는 시설장과 종사자

---

12)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2호 및 제4항 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행정기관의장에게 위임

▷▷▷명에 대해 결격사유나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일부 누락하여 채용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연 1회 이상 취업자등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점검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사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었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 등 3개 부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 근거한 범죄경력 조회 여부 확인 절차를 일부 누락하였고,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채용 전에 철저히 점검 및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범죄조회 등을 미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격 사유 및 학대 관련 범죄조회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별지]

[별표] 사회복지시설 범죄경력 미조회 내역 “생략”

일련번호	14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과, 다과, 라과 (마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과, 다과, 라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마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 나과, 다과, 라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sup>13)</sup> 운영규정」에 따라 제3종시설물<sup>14)</sup>인 건축물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정기 안전점검, 설계도서 제출 등 공공관리주체로서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민간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제3종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미제출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시설물안전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되, 제3종시설물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할

13) 시설물안전법 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운영중인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14)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시설물로 시설물안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도지사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민간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관리주체로부터 시설물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에는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시·도지사에게 대한 제출자료의 보고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설물안전법 제6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관리계획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물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민간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와 같이 □□ 등 ○개소의 202○년 시설물관리계획 및 ○○ 등 ○개소의 202○년 ~ 202○년 시설물관리계획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하지 않았으며, ○○의 민간관리주체인 △△가 202○년 시설물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표]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현황 “생략”

그 결과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 안전점검 실시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

치 등<sup>15)</sup>이 이루어질 수 없는 우려를 낳게 되었다.

### 3. 제3종시설물 설계도서 등 미제출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시설물안전법 제9조 제2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서류(이하 “설계도서 등”이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제3항에는 관리주체가 관련 서류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설물안전법 제6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민간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남양주시 나과, 다과, 라과(이하 “나과 등”이라 한다)는 설계도서 등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별지의 [별표 1] “설계도서 등 미제출 대상 현황” 과 같이 가과는 □□ 등 ○○개소의 민간관리주체가 설계도서 등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나과 등은 소관 시설물인 △△ 등 ○개소의 설계도서 등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설계도서 등의 검토를 통한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 확인,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시설물관리계획 등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 4.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미 실시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되, 제3종시설물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에 따르면 A, B, C 안전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별지의 [별표 2] “정기안전점검 실시 현황” 과 같이 □□ 등 ○개소에 대해 202○년 ~ 202○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안전점검을 통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상태 변화, 여건 등을 확인하지 못해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대상이 대부분 준공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기존 도면을 알아보기 어려운 문제점 등이 있어 202○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진행 시, 실측도면 작성을 과업에 추가하여 도면 수령 후 시스템 상에 등록하였고, 향후 시설물관리 의무사항에 대하여 미이행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과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과 등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실측도면)를 제출하였으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3종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정기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지]

[별표 1] 설계도서 등 미제출 대상 현황 “생략”

[별표 2] 정기안전점검 실시 현황 “생략”

일련번호	15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승강기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대상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처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변경(이하 “선임 등”이라 한다) 통보, 보험 가입, 안전검사 등의 승강기 안전관리 의무를 미이행한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등 통보기한 미준수 대상 과태료 미부과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승강기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같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승강기법 제78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의 통보 접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고, 공단은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관 등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승강기법 제8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표 1], [표 2]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sup>16)</sup>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전) “생략”

[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후) “생략”

따라서 가과는 승강기법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등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경기도로부터 주기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현황<sup>17)</sup>’과 함께 국가승강기정보센터<sup>18)</sup> 활용 방법을 통보받아 이를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등 통보를 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2024. 9. 24., 이하 생략) 별지의 [별표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등 통보기한 위반 현황”과 같이 기한 내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통보하지 않은 □□ 등 ○○개소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해 승강기를 조작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아 승강기 이용자의 갇힘 사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출 등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 3. 승강기 보험 관련 업무처리 소홀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승강기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승

16) 승강기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2022. 2. 3. 개정, 2022. 3. 2. 시행되었으며, 부칙(대통령령 제 32382호, 2022. 2.3.) 제6조에 따라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

17)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신규 승강기 설치 대상

18) ‘안전관리자 미선임 현황’ 조희를 통해 엑셀자료 추출 시 해임일자 등 현황 확인이 가능함

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승강기법 제8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표 3], [표 4]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전) “생략”**

**[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후) “생략”**

따라서 가과는 승강기법에 따라 승강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감사일 현재까지 경기도로부터 승강기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을 독려하고 미가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수신하였는데도 별지의 [별표 2] “승강기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 과 같이 □□ 등 ○○개소(승강기 ○○○기)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가입 독려,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승강기 사고로 인해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4. 승강기 안전검사 불합격 후 기한 내 안전검사 미실시 대상 과태료 미부과**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승강기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승강기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검사의 업무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제2항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결과가 불합격<sup>19)</sup>인 경우 그 내용을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승강기법 제8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1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않는 경우 [표 5]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 [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생략”

따라서 가과는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한 후 기한 내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않은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감사일 현재까지 별지의 [별표 3] “승강기 안전검사 불합격 후 기한 내 안전검사 미 실시 현황” 과 같이 □□공단 및 ○○진흥원으로부터 공문을 통해 ‘안전검사 불합격 승강기 재검사 미신청 현황’ 을 확인하였는데도 기한 내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않은 △△ 등 ○○개소(승강기 ○○기)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기한 내 안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승강기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주무관 ○명이 타 업무와 병행하면서 ○○여 대 승강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개별 승강기 관리주체의 정보(주소지, 연락처 등)가 분명하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있어 승강기 업무처리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나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사후관리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니 선처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9) 안전검사기준(「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별표 2 ~ 4]에 맞지 않는 경우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앞으로,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 독려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등 통보하지 않은 승강기 관리주체 및 승강기 안전검사 불합격 후 기한 내 안전검사 실시하지 않는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지]

[별표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등 통보기한 위반 현황 “생략”

[별표 2] 승강기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 “생략”

[별표 3] 승강기 안전검사 불합격 후 기한 내 안전검사 미실시 현황 “생략”

일련번호	16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관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 · 주의요구

**제 목** 민방위 업무처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관)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관(이하 “가관” 이라 한다)은 「민방위기본법」,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침<sup>20)</sup>」, 「남양주시 민방공경보단말<sup>21)</sup> 운영 규정」에 따라 민방위 계획 수립, 시설, 장비 및 민방공경보단말 관리 등의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민방위 계획 시·군·구협의회 심의 소홀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민방위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군·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군·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관은 매년 경기도의 민방위 시행계획이 작성되면 그에 따라 남양주시의 민방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경기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0) 민방위 시설장비 지침에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지침으로 지침의 명칭이 2024. 1. 변경됨

21) 민방공경보시설 관리 및 경보전달을 위하여 설치된 민방공경보 분배, 중계, 수신 단말

그런데 가관은 [표]와 같이 2020년도 남양주시의 민방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2020년도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기도 전에 경기도에 민방위 시행계획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

### [표] 민방위 계획 심의·보고 내역 “생략”

그 결과, 「민방위기본법」을 준수하지 않고 민방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민방위·화생방 장비 분기별 점검 미실시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민방위기본법」 제15조, 제15조의2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민방위계획에 따라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와 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 등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민방위 업무 지침」 4.-Ⅳ.와 Ⅴ.에 따르면 민방위사태에서 주민보호를 위해 수행되는 방공, 응급적인 방재 등을 위해 필요한 민방위 장비와 화생방 상황에 대비하여 민방위대원이 주민보호를 위해 대피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생방 장비를 확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군구 민방위 계획에 따라 읍·면·동 합동으로 민방위·화생방 장비에 대해 분기 1회 점검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관은 민방위 시행계획에 따라 읍·면·동 합동으로 민방위·화생방 장비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관은 감사일 현재까지(2024. 9. 25., 이하생략) 민방위·화생방 장비에 대해 경기도의 연도별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일제점검만 실시한 채 민방위 시행계획에 따른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민방위 장비·물자 관리대장의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등의 수량이 현행화되지 않는 등 비상 상황 시 장비 사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우려를 낳게 되었다.

#### 4. 민방공경보단말 운영 규정 미준수 및 개정 소홀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남양주시 민방공경보단말 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경보단말 설치지역이 ○개소로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라 중계 및 수신단말 관리요원으로 지정한 읍·면·동의 민방위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통신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관은 경보단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남양주시 민방공경보단말 운영 규정」의 [별표]를 개정하여 경보단말 설치지역을 추가하여야 하고, 시설 관리요원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통신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관은 감사일 현재까지 별지의 [별표] “민방공경보단말 설치지역” 과 같이 경보단말 설치지역이 ○○개소나 되는데도 「남양주시 민방공경보단말 운영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시설 관리요원에 대한 통신보안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남양주시 민방공경보단말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시설 관리요원에 대한 보안관리가 소홀해지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관은 「민방위기본법」,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지침」, 「남양주시 민방공경보단말 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남양주시 민방공경보단말 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 관리요원에 대한 통신보안교

육을 실시하고, 민방공경보단말 설치지역 현행화 등 해당 운영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앞으로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민방위 시행계획 수립 시 협의회 심의절차 이행, 민방위·화생방 장비에 대한 분기별 점검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지]

[별표] 민방공경보단말 설치지역 현황 “생략”



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지방보조금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가과는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공모절차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여러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통하여 공정하게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1]과 같이 2015년부터 예술단체의 육성 및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술단체의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 운영비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관내 예술단체가 남양주◎◎ 외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도 그간의 관례와 남양주◎◎만이 사업목적 달성할 수 있다는 이유<sup>23)</sup>를 공모제외 사유로 적시하여 공모를 거치지 않았고, 매년 남양주◎◎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감사일 현재(2024. ☆. ☆. ☆.)까지 총 408,377,000원을 지원하였다.

[표 1] ♠♠♠♠♠♠ 운영비 지원사업 현황 “생략”

한편 가과는 2021. ☆. ☆☆. [그림 1]과 같이 그간 해당 사업이 공모 제외로 추진되어 법령을 위반했던 사항을 바로잡고, 3개 단체를 형평성 있게 공모로 선정하기 위해 9백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2022년 ♠♠♠♠♠♠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 편성 계획”을 세웠으며, 여기에는 협조부서인 남양주시 다과(이하 “다과”라 한다)의

23)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제4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모 절차 이행 요망’이라는 부대의견까지 명시되었다.

### [그림 1] ♠♠♠♠♠ 운영비 지원 사업 예산편성 계획(발취) “생략”

그러나 가과는 같은 해 8월경 남양주○○○에서 사무실 임대료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자 단체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라는 이유로 2021. ☆. ☆☆. 다과로 2022년도 지방보조금 심의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사업을 공모 제외로 명시하여 또 다시 공모를 거치지 않고 남양주○○○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그 이후 2024년 까지도 공모절차로 변경하려는 노력 없이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특정 문화예술단체만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동시에 남양주시의 다른 문화예술단체는 운영비를 지원받을 기회가 상실되는 등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2023년 ♠♠♠♠ 페스티벌’ 자금교부 통지서의 교부조건 8.에 따르면 용역이나 200만 원 이상의 물품계약시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에 따르면 용역·물품은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남양주○○○이 교부조건과 어긋나게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남양주○○○은 2023. ☆☆. ☆☆. ♣♣♣♣♣와 ‘♠♠♠♠ 페스티벌’의 무대제작 및 음향·조명장비 등의 임차를 위해 총 27,068,000원의 용역 계약을 추진하면서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가과는 2023년 ☆월부터 같은 해 ☆☆월까지 행사 준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출장 및 유선연락 등 업무협의로 인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지방보조금 정산 소홀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2023년 ♠♠♠♠ 페스티벌’ 자금교부 통지서의 교부조건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 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남양주◎◎이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실적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23년 ♠♠♠♠ 페스티벌’의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면서 남양주◎◎이 대표자 A에게 행사 기획이라는 명목으로 2023. ☆☆. ☆. 인건비 967,000원을 지급한 후 실적보고서에 활동내역 및 추진성과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

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하지 않은 채 ‘이상없음’으로 보고<sup>24)</sup>하였다.

그 결과 지방보조사업비 집행의 신뢰성과 정당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2021. ☆. ☆☆. ♠♠♠♠♠♠ 운영비 지원사업의 공개모집 계획이 수립된 이후, 2021. ☆. ☆☆. 남양주 <<센터 관리 수탁자였던 남양주○○○으로부터 ‘남양주 <<센터 관리위탁 해지처분<sup>25)</sup> 취소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남양주○○○에 의도적 불이익 제공이라는 오해의 소지 발생 우려와 사무실 이전으로 임차료 증액 보조요청이 있어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공개모집을 미루었고,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공모 전환이 되지 못하였으며, 다른 시·군도 공모가 아닌 지정방식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양주 <<센터 관리위탁 해지는 ‘○○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2018. ☆. ☆☆. 고시되어 이전부터 충분히 예견되어 왔던 사항이므로 2021년에 공모로 변경한다고 하여 의도적 불이익 제공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잦은 담당자 변경과 다른 시·군의 추진사례를 통해 위법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지적된 보조사업 운영에 대해 공모사업으로의 전환 여부 및 조례 제정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를 「남양주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24) 남양주시 가과-2○○○○호(2023. ○○. ○○.)

25) 남양주 <<센터 부지가 도시재생사업인 ●●●센터 설치장소로 2018. ○. ○○.에 지정되었고, 라과로부터 2021. ○. ○○. 사업추진을 위한 관리위탁 해지요청을 받아 추진됨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 운영비 지원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방식을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는 등 공정한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 조례” 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때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능력,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평가항목으로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기존의 수탁자와 계약을 갱신할 때 관리능력 및 재무구조 안전성 등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항목으로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과는 담당자의 업무 연찬 부족으로 공유재산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2023. ☆. ☆☆. 자체 ◎◎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수탁자와 수의로 위탁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의결<sup>26)</sup>한 후 조합과 수의로 계약 갱신을 결정<sup>27)</sup>하였으며, 2024. ☆. ☆☆. 위수탁 협약을 최종 체결하였다.

그 결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연장 되는 등 수탁자 자격 검증 및 갱신 절차의 투명성이 훼손되었다.

### 3. ◎◎◎◎◎◎◎◎◎◎센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소홀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공유재산법 제3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26) 나과-11647호(2023. ☆. ☆☆.)

27) 라과-2391호(2024. ☆. ☆☆.)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위탁사무의 내용은 ‘○○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센터 운영활성화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조합은 ○○센터를 이 계약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제11조에 따르면 가과는 ○○센터 운영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할 수 있고 점검 결과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조합 정관 제2조에 따르면 조합은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협동사업을 수행 등이 명시되어 있고, 제4조에 따르면 조합의 업무구역은 남양주시, ◇◇시, □□시, ▽▽군, ▼▼군 일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조합은 ○○센터의 관리 운영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만 시설을 사용해야 하고, 조합 고유업무<sup>28)</sup> 등으로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가과는 위탁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수탁자인 조합은 2017. ☆. ☆. 주사무소를 ○○센터의 주소지로 변경 등기하였고, [그림 1]과 같이 ○○센터 입구에 조합의 현판을 세웠으며, 사무실·조합장실·강당 등 총 480㎡의 시설을 위탁사무와 조합 고유업무로 병행 사용하고 있었다.

#### [그림 1] ○○센터 현장 확인 사진 “생략”

그러나 가과는 감사기간<sup>29)</sup> 동안 연도별 사업계획서 승인 및 ○○센터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하였는데도 별다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28) 조합 홍보사업, 조합 총회 및 이사회 개최 등

29) 2018. ☆. ☆. ~ 감사일 현재



일련번호	19	감사자	○○○○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다음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복지회관 및 ◎◎복지문화센터 수탁자 선정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다음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다음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2004년부터 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표 1]과 같이 ◆◆복지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과 ◎◎복지문화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건립하고, 지역 마을공동체와 민간 위탁을 체결하여 시설 관리·감독을 추진하였다.

[표 1] 민간위탁 시설 현황 “생략”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sup>30)</sup>에 따르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하 “공유재산

30) 법제처 법령해석 08-0315, 2008. 12. 30.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91(2020. 2. 12.)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6.-나-1) 수의계약 대상에 따르면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 조례”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때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능력,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위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기존의 수탁자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갱신 시점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실제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등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항목으로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2]와 같이 ◇◇회관과 ◎◎센터의 위·수탁 갱신 업무를 하면서 담당자의 업무 연찬 부족으로 관리위탁 사항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였고, 관리위탁 갱신시

수탁자인 위원회가 실제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마을공동체로서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정관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으며, 재산의 관리·운영능력과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계약 갱신을 결정하였다.

특히, ◇◇회관의 위·수탁 계약을 갱신하면서 별도 내부 방침결재도 받지않고 담당자가 이전 협약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임의 체결하였다.

#### [표 2] ◇◇회관 및 ◎◎센터 위·수탁(수의계약) 현황 “생략”

그 결과 관계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회관의 위·수탁 갱신시 아무 근거 없이 임의 체결한 것은 아니고, 사전 지도·점검 결과<sup>31)</sup>에 따라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이 우수하였음을 근거로 갱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전 지도·점검은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제1항<sup>32)</sup>에 따른 수탁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행위로서 수탁자 선정과는 관련이 없고, 수탁자 검증 및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위탁 수탁자 선정시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의 준수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주의)

31) 다음 가과-100000호(2020.0.00.)

32) 읍·면·동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정기 검사를 하게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관리위탁의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한 기존 수탁자의 자격 및 관리 능력 검증,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등 사후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20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나과 (다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훈계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ㄱ 관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다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국 나과(이하 “나과” 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이라 한다) 제27조 등에 따라 행정재산인 ㄱ를 2019년부터 ○○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 2. ㄱ 관리위탁 업무 부적정

##### 가. 판단 기준 (관계 법령 등)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이하 “공유재산 운영기준” 이라 한다) 제10조 제5항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 제6항에 따르면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이 고시(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 따르면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최고가 낙찰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적격심사로 입찰방법의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과는 행정재산인 ㄱ의 관리위탁과 사무의 민간위탁이 혼용되게 위탁 운영할 경우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추진하며,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최고가 낙찰 또는 적격심사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나과는 ㄱ의 위탁운영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민간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원가분석 및 그 결과에 따라 최고가 낙찰 또는 적격심사의 방법으로 일반입찰을 진행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지 않은 채 구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1○. ○. ○. 수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의 심의만 받은 채 ○○으로 하여금 ㄱ를 위탁 운영하게 하였다.

그 결과 공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수탁기관이 선정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ㄱ 내 사무실 사용허가 업체 선정 및 사용료 면제 부적정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공유재산법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받은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유재산 업무편람」 제2장-제3절-7 위·수탁 계약에 따르면 행정재산 수탁자가 제3자에게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계약방법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의 일반입찰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공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과는 ㄱ 내 일부 사무실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하려면 ㄱ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입찰로 사용허가 하거나 ㄱ의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남양주시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입찰을 통해 전대 사용하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제3자가 일부 사무실을 사용하게 된다면 공유재산법 등에 사용료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매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나과는 ㄱ의 위탁운영을 추진하면서 관리수탁자로부터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절차나 일반입찰에 의해 사용허가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201○. ○. ○. [표 1]과 같이 ㄱ 배치(안)을 포함하여 “남양주시 ㄱ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이하 “ㄱ 추진계획”이라 한다) 결재를 받고, 감사일 현재까지 ㄱ의 일부

사무실을 △△ 및 ▲▲(이하 △△ 및 ▲▲를 함께 “입주업체”라 한다)가 사용하게 하였다.

**[표 1] ㄱ 공간배치(안) : “생략”**

그리고 나과는 ㄱ 추진계획에서 사용료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입주업체가 남양주시 운영비 보조 지원을 받는 곳으로 사용료 자부담 능력이 없어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겠다는 결재를 받고, 관리수탁자로 선정된 ○○과 위·수탁 협약서에 입주업체가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협약을 체결하여 [표 2]와 같이 입주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용료 등 약 ○억 ○천 ○백만 원을 면제하였다.

**[표 2] ㄱ 입주업체 사용료 면제 현황 : “생략”**

그 결과 공유재산법을 위반하여 사용허가 등을 추진하고 사용료를 임의로 면제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였다.

**4. ㄱ 예산 목적 외 사용 등**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75조에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합한 물품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과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의 용도로만 경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불용을 결정하고 불용품 소요조치에 따라 소요기관을 전환하거나 소요가 없는 경우에는 매

각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불용품 처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나과는 201○. ○. ○. ㄱ 이용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를 구입·설치하기로 하는 계획을 보고하였으나, 201○. ○. ○. [표 3]과 같이 ㄱ의 운영 목적과는 관련 없는 ○○ 및 입주업체의 물품을 ㄱ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구매하여 제공하였다.

#### [표 3] ㄱ 목적 외 물품구매 현황 : “생략”

또한 201○. ○. ○. ▲▲가 사무실 내 사용할 가구집기류 등 물품을 요청하자 201○. ○. ○. 매각 등 불용품 처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별지의 [별표] “ㄱ 내 ▲▲ 사용 물품 현황”에 따른 물품을 무상 제공하였다.

그 결과 물품 비용 약 ○○○○만 원만 큼 ○○ 및 입주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공유재산법 등에서 정한 물품 운영·관리의 적정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나과는 감사 지적사항을 모두 인정하면서, 향후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수탁협약 재계약 변경계약 및 사용료 부과, 물품 관리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하고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ㄱ 관리·운영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들을 「남양주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업무가 혼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료 산정 등의 업무를 철저히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행정재산의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사무실과 물품에 대해 사용료 부과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에 따른 적절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21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추징	재정상 조치금액	65,993,34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시정요구

**제 목**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납세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 적격요건의 충족 여부, 감면 목적에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사후관리를 통하여 확인하고, 감면 요건을 상실한 납세자의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농업법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8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 3”에서 같다)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의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납세자가 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사후관리를 통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유예기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가 202○. ○. ○. 남양주시 ○○동 소재의 토지를 취득하여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았으나, [표 1]과 같이 농업법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그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감면한 취득세 등 12,132,72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않았다.

[표 1] 연도별 항공사진 : “생략”

### 3. 노인복지시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1호 본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납세자가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사후관리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202○. ○. ○. 주식회사 △△가 남양주시 ○○읍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았으나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는 데도, 감면한 취득세 등 32,109,780원(가산세 포함) 추징하지 않았다.

### 4.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4”에서 같다) 제36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sup>33)</sup>(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sup>34)</sup>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써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여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산출세액에서 200만 원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3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34)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가과는 납세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 구입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사후관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 2]와 같이 A 등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그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여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감면한 취득세 등 5,290,870원(가산세 포함) 추징하지 않았다.

### [표 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추징 대상내역 : “생략”

#### 5.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5”에서 같다) 제 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sup>35)</sup>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납세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취득한 사업시설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3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

그런데 가과는 [표 3]과 같이 지식산업센터를 최초 분양받은 입주자가 5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감면한 취득세 등 16,459,970원(가산세 포함) 추징하지 않았다.

**[표 3]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추징 대상내역 : “생략”**

그 결과 납세자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감면 요건을 상실하였는데도 부당한 감면 혜택을 받았고, 정당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한 자와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등 세무행정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 지적사항을 모두 인정하면서, 확인한 추징 대상에 대하여 추징하고 감면 부동산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향후 지적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면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등 ○인에게 취득세 등 65,993,34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득세 감면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22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추징	재정상 조치금액	50,296,73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시정요구

**제 목**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징수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신고·납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누락된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36)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36)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요건충족)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괄호 생략)부터 60일 이내[괄호 생략]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납세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무신고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 1]과 같이 A 등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어 그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무신고된 취득세 등 50,296,7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1]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납부 미이행 대상내역 : “생략”

그 결과, 취득세 등의 부과를 누락하여 세입예산 확보에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등 세무행정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 지적사항을 모두 인정하면서, 국세청 과점주주 과세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과세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수행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A 등에게 취득세 등 50,296,73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23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식품제조가공업 품목제조보고 검토·처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로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에 관한 보고 사항에 관하여 검토·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및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제조방법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품목제조보고사항 중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 비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를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지침(2020)」 II-1.-8.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사항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원료 여부 및 사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알기 쉬운 식품 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2020. 7. 30.)」 1.-3.-6. 품목제조보고서 작성에 따르면 원료가 복합 원재료<sup>37)</sup>인 경우 ‘원재료명’란에 식품 유형을 기재하고 ‘원재료 기타 설명’란에 복합 원재료의 제품명을 기재한다고 되어 있으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II-5.-나.에 따르면 혼합제제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료 성분으로 각각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식품첨가물은 해당 기준(사용량)에 적합하게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영업자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보고 서식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상세히 검토하여 부적합한 경우 반려하거나 보완하게 하여 기준에 맞는 식품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19. 9.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2024. 8. 31. 이하 생략) 생산 중인 품목을 기준으로 ●건의 영업자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처리하면서 별지 [별표 1]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내역” 과 같이 식품제조가공업체 □□기업의 ㄱ 제품 등 ●개 업체의 ●개 제품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준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보고된 사항인데도 적합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그 중 ●개 업체의 ●개 제품은 생산·유통되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 ○○기업의 ㄴ 등 ●개 업체 ●개 제품은 별지 [별표 2]

37)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처리·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있는 것이고, “복합원재료”라 함은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하여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에 품목제조보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식품을 말한다. (출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혼합제제 또는 식품첨가물로만 표기되어 개별 사용기준 미확인한 품목제조보고 내역” 과 같이 품목제조보고한 내용 중 원재료 및 성분명에 혼합제제<sup>38)</sup> 또는 식품첨가물로만 표기하여 상품명에 무엇이든지, 포함된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양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게 제출하여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식품유형별 식품첨가물 사용허용량을 검토할 수 없는데도 반려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적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먹거리 안전과 식품위생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2024. ●. ●. ~ ●. ●. 감사 지적된 업체 및 품목에 대하여 원료출납 관계서류, 생산 및 작업기록 등을 점검하여 식품첨가물 사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품목제조보고 담당자 교육과 주기적인 품목보고내역에 대한 자체 감시를 실시하는 등 자체 노력을 비롯하여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품목제조보고 검토·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남양주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관내 품목제조보고 사항에 대한 첨가물 등 기준 규격 적합 여부 검토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식품안전관리지침(2024)」 I-1.-8.에 따라 [별표 1]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내역” 과 별지 [별표 2] “혼합제제로만 표

38)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II.-4.-나.에 따르면 혼합제제란 식품첨가물을 2종 이상 혼합하거나, 1종 또는 2종 이상 혼합한 것을 희석제와 혼합하거나 또는 희석한 것을 말한다. (중략) 다만, 혼합제제에 속하는 것일지라도 따로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이 규격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기되어 개별 사용기준 미확인한 품목제조보고 내역”의 해당 업체에서 보고한 기존 품목내역과 수정 보고내역의 원재료 함량 일치 여부 및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적법하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24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주의요구

**제 목**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이라 한다)」 등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식품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르면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영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식품등을 판매한 양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9)</sup>.

39) 현행 식품표시광고법(2024. 1. 2. 일부개정, 2024. 7. 3. 시행) 제13조에 따르면 2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가과는 휴게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식품등의 판매량과 가격을 조사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팀이 2022.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기업을 현장 점검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영업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서 등 관계 서류를 공문으로 통보하였는데도, 아래 [표]와 같이 영업정지 2개월 외에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 [표] 과징금 미부과 내역 “생략”

더욱이, 당시 통보된 위반내역에는 제품 판매처, 판매량, 총 판매 금액(◆원 상당)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특별한 추가 조사나 검토가 필요하지 않아 바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었는데도 해당 업체가 2022. ●. ●. 자진 폐업할 때까지 부과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방세입에 손실을 초래하고 제재처분으로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처분을 누락하였고 향후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앞으로 식품표시광고법 등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25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다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시정요구

**제 목** 공인 조례 미준수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다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다과(이하 “다과” 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 등 소관 관계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여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 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sup>40)</sup>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제4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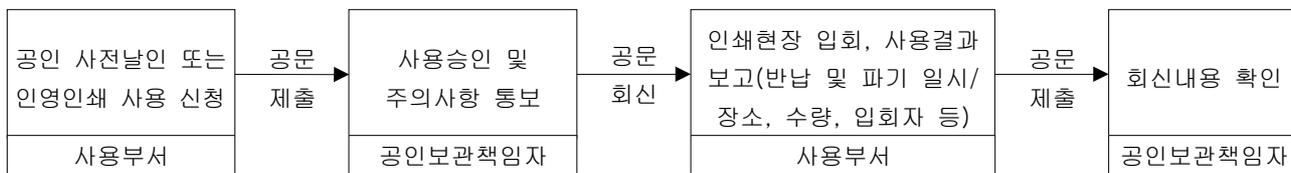
「남양주시 공인 조례(이하 “공인 조례” 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표창장·감사패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관인을 포함한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하되, 관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40) 행정업무규정 제3조 제9조는 “전자이미지관인”이란 관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보관책임자인 행정지원과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2020년도 행정업무운영 편람」에 따르면 여러 처리과에서 각종 단체에 대한 공로패 수여 또는 기타 업무 등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문서과와 협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제공하되, 공인 날인이 필요한 업무가 종료되면 보관된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도록 하고, 부정사용이나 외부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서약서 징구 등 보안대책을 취하여야 한다고 기술<sup>41)</sup>되어 있다.

### [참고]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절차



자료: 공인 조례 및 시행규칙 재구성

따라서 다과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조례에 따라 사전 협의한 후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는 생략하여야 하고, 누리집 등에 전자문서를 고시·공고하는 경우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 등을 실시한 후 게시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다과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면서 반송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별지의 [별표] “공인 조례 미준수 및 전자이미지공인 노출문서 목록” 과 같이 ●건의 문서에 관한 사항을 누리집 ‘고시/공고’ 란에 공시송달하면서 공인보관책임자로부터 전자이미지공인 사용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알 수 없는 경위로 보유한 시장적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문서에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집 권한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그 결과 전자이미지공인의 부정 사용 우려와 행정청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1) 행정안전부 「2020년도 행정업무운영 편람」 제5장 질의 및 답변 278, 279쪽 발췌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다과는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 과정에서 과거 문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나 전자이미지 공인이 보안조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현재는 해당 파일이 포함된 모든 자료를 삭제하였으며, 이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앞으로, 전자이미지공인 사용에 관한 공인 조례를 엄격히 준수하고, 내·외부 유출 및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다과는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이 포함된 편집 가능한 전자문서에 대해 암호화 또는 열람 불가 등을 설정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이 재사용될 수 없게 하고, 이미 게시된 고시·공고문의 경우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게시하는 등 외부로 전자이미지공인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26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 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는(이하 “가과” 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인 ○○ 테니스장<sup>42)</sup>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하는 등 체육시설 개선 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지만,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공원 등(체육공원<sup>43)</sup>) 이하 “허용되는 시설” 이라 한다)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장·군수의 허가(이하 “행위허가” 라 한다)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

42) ○○면 ☆☆리 ◆◆◆-◆◆번지 일원

43)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부 훈령 2013. 9. 2. 훈령 제2013-281호, 이하 “심사 규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계획 시설<sup>44)</sup>은 시설명·설치주체(사업시행자)·위치·규모 등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sup>45)</sup>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심사 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마목의 그 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000㎡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10,000㎡ 이하로 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하 “미반영 시설 협의”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는 시설개선 공사를 하는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소관 부서)와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 및 행위허가 절차를 선행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sup>46)</sup>인 ○○ 테니스장에 관하여 [표 1]과 같이 20\$\$년 “☆☆리 테니스장 시설개선 공사” (이하 “20\$\$년 시설개선 공사”라 한다) 및 20&&년 공공체육시설 지원 공모 사업” (이하 “20&&년 시설개선 공사”라 한다)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하였다.

#### [표 1] ○○면 테니스장 시설개선 공사 현황 : “생략”

“20\$\$년 시설개선 공사”의 주요 사항은 테니스장 코트 3면 교체, 화장실 설치(5.9×2.8×3.0m) 및 진입로 아스콘 포장(834㎡) 등으로, 이 중 건축물의 건축(화장실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아스콘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개발제한구역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45)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 및 환경 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46) 20\$\$\$. \$. \$. 도시계획시설 결정 - 체육공원 면적 : ○,○○○㎡

담당부서)과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어야 했으나, 미반영 시설 협의뿐만 아니라 행위허가 또한 받지 않은 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불법 건축물이 잔존하게 되었다.

또한 가과는 @@@@부에서 진행한 “20&&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sup>47)</sup>되어 테니스장 코트 2면 교체 및 샤워실(5.9×2.8×3.1m)설치를 위해 “20&&년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축물의 건축(샤워실 설치)에 관하여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였다.

이후 샤워실 설치를 위해 3회에 걸쳐 라과와 행위허가 협의를 진행하여 [표 2]와 같이 행위허가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오자 협의의견대로 보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 \$\$.\$\$. 사업취소 검토 보고<sup>48)</sup> 후 20\$\$.\$\$. \$\$.\$\$. 공사 계약을 해지하였다.

#### [표 2] ○○면 테니스장 행위허가 협의 내용 : “생략”

그리고 이미 제작되었으나 설치되지 못하고 있던 샤워실에 대해서는 물품비용 ○○○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고 다른 체육시설(▲▲읍 ■■■리 배드민턴장)에 설치하였다.

그 결과 가과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협의를 소홀히 하여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사업들을 진행할 때 사업의 적정성 및 사전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47) @@@@부 다과-6014(20\$\$.\$\$. \$.\$\$.)

48) 가과-8599(20\$\$.\$\$. \$.\$\$.)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행정절차를 누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남양주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면 ☆☆리 ◆◆◆-◆◆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 및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27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시정요구

제 목            등록 체육시설업 위반행위 사후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이하 “사무위임 조례”라 한다)에 따라 체육시설업 등록(변경 등록) 및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등록 체육시설업인 골프장업은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회원제와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비회원제로 되어 있다.

체육시설법 제1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

인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으며 위 등록(변경) 사항은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체육시설법 제30조 제2호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체육시설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별표 7 일반기준 나목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 기준에 따른 경고 또는 영업정지를 할 때에는 처분권자가 일정기한 내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고 되어 있다.

한편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체육시설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을 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등록 체육시설업자의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을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 체육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행위가 치유될 수 있도록 절차에 맞게 사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 이후에는 처분내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과는 경기도 다과로부터 [표 1]과 같이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골프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요청 통보를 받아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을 진행하였다.

#### [표 1] 골프장 위반행위 현황: “생략”

가과는 20\$\$\$. \$\$\$. \$\$\$. [표 2]와 같이 ◇◇◇◇CC(비)에서 운영 중인 3개의 코스(1홀, 2홀, 5홀)를 나누어 추가로 3개 코스를 증설·운영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경고 처분 및 과태료 부과 후 ◇◇◇◇CC(비)에서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1차 20\$\$\$. \$\$\$. \$\$\$.까지, 2차 20\$\$\$. \$\$\$. \$\$\$.까지 조치기간을 주고 등록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이행을 통보<sup>49)</sup>하였으나 ◇◇◇◇CC(비)에서 감사일 현재(20\$\$\$. \$\$\$. \$., 이하 생략)까지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 경우 조치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2차 위반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으나 가과는 현장 확인 등 점검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10일의 2차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 [표 2] 위반사항(◇◇◇◇CC 비회원제): “생략”

또한 가과는 20\$\$\$. \$\$\$. \$\$\$. ◇◇◇◇CC(회)에서 [표 3]과 같이 그린 추가 설치 및 도로·벙커·티·연못 변경 설치 등 총 ○○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 처분 및 과

49) 가과-6890(20\$\$\$. \$.\$.)

태료를 부과하고 20\$\$, \$\$, \$\$까지 등록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이행을 통보<sup>50)</sup>하였으나  
◆◆◆◆CC(회)에서 감사일 현재까지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이 역  
시 2차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3] 위반사항(◆◆◆◆CC 회원제) : “생략”

그리고 20\$\$, \$\$, \$\$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표 4]와 같이 원형지를 훼손  
한 ○○○○CC에 대하여 20\$\$, \$\$, \$\$까지 본래의 원형지로 복구할 것을 명령<sup>51)</sup>하였  
는데 이 역시도 감사일 현재까지 원형으로 복구하지 않고 있는데도 시정명령 미이행  
에 따른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은 물론 특별한 사유 없이 사법 기관에 고발도 하  
지 않았다.

[표 4] 위반사항 및 현장사진: “생략”

한편 가과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  
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처분한 사항에 대한 대장관리를 일체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가과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  
시키고자 하는 체육시설법의 목적을 훼손하고, 경기도로부터 관련 법령의 시정명령  
과 등록 취소 등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 관할 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  
여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행정처분 내용에 대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행정처분에 있어 절차에 맞는 사후 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50) 가과-8○○○(20\$\$, \$. \$.)

51) 가과-11○○○(20\$\$, \$\$, \$.)

- 등록체육시설업 위반사항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행정처분을 신속히 이행하고,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대장 기록·관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28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 ○○○○ ○○ 콘텐츠 제작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에 따라 [표 1]과 같이 “○○○○○ 관련 ○○콘텐츠 제작 용역” (이하 “○○콘텐츠 제작 용역” 이라 한다)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콘텐츠 제작 용역 수의계약 명세: “생략”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

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sup>52)</sup>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어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과는 다과에서 신청하여 경기도 공모(시군과 함께하는 ○○○○ 및 ▲▲ 추진사업)에 선정<sup>53)</sup>된 ◆◆◆◆ 다큐멘터리 및 ●●●●●● 애니메이션 제작을 과업으로 한 ○○콘텐츠 제작 용역 계약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다과는 20\$\$, \$\$, \$. 용역계약 요청서에 ☆☆☆ 미디어 주식회사가 국내 최대 콘텐츠 유통 전문회사이며 타 지자체와 관련 콘텐츠 수의계약 실적이 다수임을 사유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첨부 하였다.

해당 사업의 예정가격은 1억 원으로 일반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그 예외로 수의계약을 체결 할 경우 해당 용역의 수행이 ☆☆☆ 미디어 주식회사만의 기술·용역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과는 다과에서 첨부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 미디어 주식회사가 제작하는 ○○○○○○ 관련 ○○콘텐츠로 경기도 심의를 받아 공모사업에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계약상대자 선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업체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다과가 경기도 공모 사업계획서에 ☆☆☆ 미디어 주식회사를 명기하였고

5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과 체결하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3) 경기도 라과-9837(20\$\$, \$. \$.)

경기도는 사업계획과 예산규모 등을 심의하여 선정하였으며, ☆☆☆ 미디어 주식회사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인 전적의 수의계약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모사업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고 하여 사업추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계약방법이나 계약상대자까지 심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2021년 경기도에서 추진한 “◆◆◆ 및 ◆◆◆사업계획”의 내용과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서도 계약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계약으로 특히 특정인과의 1인 수의계약은 당해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제도적 또는 능력적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한 객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수의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남양주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29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소, 다소, 바센터 (사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기관경고,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면허증서 발급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소홀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소 나과, 다소 라과·마과, 바센터)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사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소 나과·아과와 다소 라과·마과 및 바센터(이하 “A소” 라 한다)는 [표 1]과 같이 관련법령에 해당하는 업소의 개설 허가·신고 및 등록 등(이하 “허가 등” 이라 한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 허가 등 대상 업소 현황 : “생략”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소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업소의 허가 등에 따라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부하기 이전에 발급대장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고 남양주시 B과(이하 “B과”라고 한다)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 후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부함으로써 해당 업소의 등록면허세가 부과 및 납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A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업소의 허가 등 사항을 처리하면서 별지의 [별표] “등록면허세 납부 미확인 업소 현황” 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변경) 등과 관련하여 총 ■■■개소의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였고, 대상 업소가 면허증서의 대표자 변경, 지위승계 등으로 허가 등의 내용이 변경되기 이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별지의 [별표] “등록면허세 납부 미확인 업소 현황” 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남양주 ○○병원 등 ▲▲개소는 신규 허가 등의 처리 당시 등록면허세 ◇◇원을 부과받았으나 감사일 현재(2024. 10. 2.)까지 납부가 완료되지 않았고, □□병원 등 ◆◆개소에 대해서는 최초 등록면허세를 부과조차 하지 않아 현재까지 누락된 등록면허세는 총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업소의 경우는 개설 이후 ●●년 동안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또한 A소는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항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면허증서 발급대장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B과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B과에서 업소 현황을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거나 체납자들의

사업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충당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방세법의 취지 및 조세 형평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A소는 업소 개설 및 변경 시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못해 누락된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 후 신고증을 발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지방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등록면허세 부과·납부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경기도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고」 조치하오니,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 「지방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각 업소에 대하여 부과 시효가 지나지 않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앞으로 개설 허가·신고 및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에 관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인·허가 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등록면허세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등록면허세 납부 미확인 업소 현황 : “생략”**

제 2024 - 6호

## 기 관 경 고

기 관 명 : 남양주시

「지방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등록면허세 부과  
· 납부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경기도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엄중 「경고」 조치  
하오니,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27.

## 경 기 도 지 사

일련번호	30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사고 마약류 발생보고 행정조치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한 사고 발생 보고를 처리하는 사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제조·판매·구입·사용·폐기 등을 하기 위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재고량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사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마약류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각각의 처분기준은 [표 1]과 같다.

### [표 1]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 “생략”

따라서 가과는 마약류취급자가 취급보고한 마약류와 사고가 발생하여 폐기 신청하는 마약류의 수량과 취급연월일 및 재고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함으로써 보고를 누락하거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유실된 마약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파악하고,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규정에 맞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21년부터 마약류 파손 등의 사유로 행정기관에 보고된 사고발생 보고 ●●건 중 마약류취급자가 제출한 사고 마약류 발생보고서의 사고발생일과 사고보고일의 기간이 최소 ◆◆일에서 최대 ◆◆일이 지났는데도 별지의 [별표] “사고 마약류 기한 내 미보고 현황” 과 같이 미다졸람 등 □□건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를 감사일 현재(2024. 10. 2., 이하 생략) 까지 조치하지 않았다.

또한 202○년 ○월 관내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약국이 전소되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가 모두 재난으로 상실되었을 때 디아제팜 등 ■■■건의 마약류에 대한 사고 발생보고를 받았으면서도 화재 이전까지 해당 기관이 제조·사용한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거나 그간의 취급보고 내역을 통해 사고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마약류취급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표 2]와 같이 리제정(5mg)을 포함한 ◎◎종의 마약류 ▲▲정의 수량에 대하여 사고 발생 보고가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마약류는 그 행방을 확인할

수 없다.

**[표 2] 사고 마약류 발생보고 누락 현황 : “생략”**

그 결과 가과가 의료용 마약류를 감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고 마약류의 지연 보고를 방치하고 일부 수량은 실재를 확인할 수 없어 마약류 관리를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화재 당시 원인파악, 피해상황 집계 및 업체 보상 등의 문제로 담당자가 적극 개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취급보고된 수량과 대조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일부 누락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마약류 업무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그에 수반되는 행정제재 사항을 엄중하게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 마약류 관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남양주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개 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사고 마약류 기한 내 미보고 현황 : “생략”**

일련번호	31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소, 나소 (마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위촉 운영·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소 나과, 다소 라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마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소 나과와 다소 라과(이하 “A소”라 한다)는 「치매관리법」, 「치매정책사업안내」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협약병원을 지정하고 협력의사를 위촉·관리하여 그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시·군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치매정책사업안내(보건복지부)」 III-3-2. 협약병원 및 협력의사 선정 기준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등을 1인 이상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협력의사는 주 8시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주 686,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된 진단·감별검사 대상자를 진료하는 협약병원의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를 전공한 의사로서 [표 1]의 우선순위에 따라 위촉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시행하는 의사대상 치매공통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1] 협력의사 위촉기준 우선 순위 : “생략”**

한편, 「지방회계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A소는 남양주 시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수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협력의사를 위촉하고, 전문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협력의사의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A소는 2018년부터 ▲▲병원, ■■병원, ◆◆병원을 협약병원으로 지정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총 ◎명의 협력의사를 위촉하였는데 2022년 치매정책사업 지침에 치매공통교육 이수 내용이 신설되어 그 이후부터는 협력의사가 교육을 이수하고 진료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치매공통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협력의사를 위촉함으로써 협력의사에게 인지저하인 자 또는 인지저하 의심군의 치매진단검사를 [표 2]와 같이 약 ★개월에서 ★개월 동안 실시하게 하였다.

**[표 2]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위촉 현황 : “생략”**

또한 협력의사를 위촉할 당시, 최초 위촉한 기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에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으면서도 협력의사의 위촉기간을 갱신하지 않은 채 개인별 위촉기간이나 해촉일자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표 3]과 같이 협력의사가 실제 진료한 일자와 수당 청구서상 작성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제출된 금액 그대로 주 8시간 이상 근무 기준에 따른 수당 총 ●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근무한 날짜보다 평균 □□일 미리 지급하였다.

**[표 3] 협력의사 수당 지급 현황 : “생략”**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A소는 협력의사 위촉 시 교육 수료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기간 연장이 될 경우 위촉장을 재발급하여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며, 수당 지급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 및 협력의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32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훈계 ·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산지 내 불법행위 행정처분 및 훼손지 사후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sup>54)</sup>(이하 “가과” 라 한다)와 다과, 라과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불법행위 단속 등 산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와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등은 그 신청 내용이 허가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하며,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 · 규모별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제53조부터 제55조 등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복구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고, 복구비용은 행위자가 복구비

54) 2020. ○. ○. 조직개편에 따른 산지관리 업무 부서 변경(가과 ← 각 읍·면·동)

를 예치한 경우 그 복구비를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와 다과, 라과는 산지의 불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 산지로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

라과는 202×. ×. ×. 인근 A(베이커리, 카페)에서 ○○동 ××-×번지 일원 임야를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sup>55)</sup>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고발조치와 원상복구 명령을 하겠다는 출장결과를 보고하였다.

이후 202×. ×. ×. 드론으로 훼손 규모를 측량하여 [표 1]과 같이 ○○동 ××-×번지뿐 아니라 ××-×번지, ××-×번지, 산 ××-×번지 일원 5,617㎡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표 1] ○○동 산지 불법행위 현황 및 조치사항 “생략”

그런데 라과는 202×. ×. ×. 행위자의 의견을 받아 「산지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보고하고서도, 202×. ×. ×.에서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또한 라과는 A가 202×. ×. ×.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원상복구하겠다는 의견서만 제출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202×. ×. ×. 원상복구명령 이행촉구 문서만 보냈을 뿐 별다른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2×. ×. ×. 가과로 업무를 이관하였다.

그리고 가과도 이에 대하여 고발 조치와 복구를 위한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아 해당 불법행위는 감사일 현재(202X. X. X., 이하 생략)까지 아무런 실효성 있는 제재를 받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

55) 202X. X. X. 임야를 불법 포장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전화 민원 접수에 따라 현장 확인

한편 다과는 202×. ×. ×. 경기도 마과가 의정부 지방검찰청 바청에 [표 2]와 같이 남양주시 ○○면 △△리 산 ××번지 내 무허가 산지전용 수사사건을 송치하면서 발송한 “산지관리법위반 송치내역 알림”<sup>56)</sup>전자문서를 접수 처리하였다.

**[표 2] ○○동 산지 불법행위 현황 및 조치사항 “생략”**

다과는 무허가 산지전용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령하여야 하고 담당자 및 담당부서가 변경될 경우 후속조치가 이행되도록 인수인계하여야 하는데도,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담당자가 변경(202X. X. X.)되거나 담당부서가 가과로 변경(202X. X. X.)되었을 때에 이에 대한 인수인계 및 업무이관을 소홀히 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훼손지 현황<sup>57)</sup>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산지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특정인이 산지를 위법하게 훼손하여 사익을 취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관리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산지 내 불법훼손지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남양주시 ○개 행정복지센터(이하 “8개 센터”라 한다)는 202×. ×. ×.까지 산림청의 산지훼손 실태조사<sup>58)</sup>(2017년) 결과 통보된 훼손의심지를 관리하는 업무와 산지전용지 외 불법행위 조사·조치·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 ×. ×. 남양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해당업무를 가과로 이관하였다.

그런데 매년 산림청이 훼손지 정리실적을 제출<sup>59)</sup>받는 등 훼손지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을 독려하였는데도, ○개 센터와 가과는 [표 3]과 같이 전체 훼손의심지 ○○○필지 중 ○○○필지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고, 결국 그중 일부 필지

56) 경기도 마과-XXXX(2023. X. X.)  
57) 감사 중 현장을 방문하여 훼손된 산지에 하우스등 설치 및 거주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였고, “경기부동산포털”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2019년 ~ 2020년 사이 산지 훼손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됨  
58) 산림청이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훼손의심지를 조사한 후 지자체 인허가 내역과 비교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해당 지자체와 최종 검수하여 훼손의심지를 확정  
59)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에서 연 1~2회 산지훼손 실태조사 훼손의심지 정리실적 파악(최근 2024. X. X.시행)

는 산지 불법훼손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래하여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 [표 3] 산림청 산지훼손 실태조사 결과 “생략”

또한 가과는 ○개 센터로부터 이관된 산지전용지 외 불법행위 조사·조치·복구 관련 ○○건 중 ○○건에 대하여, 별지의 [별표 1]과 같이 감사일 현재 기준 최소 151일부터 최대 1,826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대집행 또는 고발 등의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그 결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관리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 가. 산지 내 불법행위 업무처리 소홀

라과는 훼손지 측량지연, 관련자 의견과 경위과약에 장기간 소요, 행위자에게 전화로 복구 설계서 제출 요구 등 산지 복구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시 측량이 필수요건이 아닌 점, 202○년 최초 출장에서 일찍이 A를 행위자로 인정한 점, 기한 내 산지 복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고발 등의 조치 및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검토하지 않은 점, 1년 5개월 동안 실질적인 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과로 이관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지 복구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라과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과는 업무이관 이후 과약한 내용이 선행된 행정조치와 차이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했다고는 하나 재검토한 그 어떤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산지 훼손 행위자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는 하나, 감사가 시작되자 현지 출장을 하고 결과보고서에 향후 고발하겠다는 출장자 의견을 포함하였는데 이 내용은 2년전 최초 출장자부터 출장결과보고서에 기재해왔던 사항으로 가과 주장은 이유없다.

아울러, 다과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고발

조치 및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위해 가과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나. 산지 내 훼손지 사후관리 소홀

가과는 해당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고발조치 및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겠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 내 불법행위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남양주시는 산지가 30,822ha로 전체면적의 67%에 해당되어 그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나, 산지 훼손 규모와 빈도가 크고 잦아 현재 담당자 ○명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제한이 있는 것은 인정된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산지 내 불법행위 처리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남양주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다과 관련 ○건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인계받은 불법 훼손된 산지 ○○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앞으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산림청 실태조사에 따른 훼손의심지 ○○○필지에 대하여 현지조사 후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산지 훼손지 관리 및 무허가 산지전용 재발방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33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훈계요구 및 통보

제 목 농어촌민박사업 지도·감독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의 신고 수리 및 확인증 발급,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제86조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건축물대장 등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및 제86조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이고 연면적은 23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88조,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시장은 농

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sup>60)</sup>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 폐쇄 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시달하는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용도변경,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소방서, 위생담당기관 및 부서, 건축담당부서 등 관련기관(부서 포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 신고사항 이외에 불법 용도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을 명령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농어촌민박사업자 거주요건 관리

가과가 추진한 반기별 정기점검의 [표 1]과 같은 추진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자 거주에 대한 점검 여부 및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 [표 1] 연도별 정기점검 추진 결과 “생략”

그러나 2024년 남양주시 종합감사 기간(2024. X. X. ~ 2024. X. X.)에 농어촌민박사업 거주요건을 전수 조사(총 ○○○개 업소)한 결과 남양주시 ○○읍 △△로 ×번길 ××-×에 위치한 A 운영자(B)는 201×. ×.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

60) 농어촌정비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은 이후 202×. ×. ×. 서울특별시 ○○구로 주소지를 옮겨 실제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당해 주택을 민박의 용도로 계속 운영하다가 종합감사가 시작되자 202×. ×. ×. 민박사업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고, 남양주시 ○○읍 △△로 ×번길 ××-×에 위치한 C 운영자(D)는 201×. ×.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202×. ×. ×. 전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도 위 사업장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가과는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수리 이후 민박사업자의 거주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지 않거나 안내를 소홀히 하여 [표 2]와 같이 ○○개 사업장에서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해 이들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2] 농어촌민박사업 거주요건 위반 내역 “생략”**

**나. 농어촌민박사업 미신고 숙박 운영 관리**

가과는 201×. ×. ×. 남양주시 ○○면 △△로 ××-×에 위치한 E 운영자의 신고 내용(주택연면적 125㎡, 객실수 ○개)과는 달리 실제로는 주택연면적 632.38㎡, 객실수 ○○개의 대형펜션이 운영되는 등 [표 3]과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미신고 숙박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위법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정기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는 내용으로 경기도 다과에 보고하였다.

또한 경기도 2024년 남양주시 종합감사 기간에 기 정기점검 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할 것을 경기도로부터 요청 받았으나, 가과는 경기도 자체조사 결과(위반업소 ○○개, ○○개 객실 초과운영)와는 달리 단 ○개 업소에 대해서만 개선명령을 하였다.

아울러 가과는 202×. ×. ×. 숙박업 및 농어촌민박업 일제점검 계획 수립 시 농어촌민박사업 편법운영에 대한 조치요령으로 미신고된 동(객실)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sup>61)</sup>으로 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불법 적발 시 처리절차에

6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남양주시 종합감사 기간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공중위생관리법 담당부서에 통보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채 민박사업자에게 개선 명령 공문만 발송하였다.

[표 3] 농어촌민박사업 객실수 위반 명세 “생략”

**다. 소결**

그 결과 상업화되고 대형화된 펜션 등의 숙박시설 운영자가 농어촌민박을 가장해 영업을 하면서 농어촌민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었고, 행정기관의 지도와 점검 없이 운영되는 불법 시설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으며, 법을 준수하며 소규모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4. 관련부서 의견**

**가. 농어촌민박사업자 정기 점검 및 거주요건 관리**

가과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주민등록정보 열람 권한 부재로 실거주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감사기간 중 ○○○개 업소를 전수 조사해 ○○○개 업소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 받은 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개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확인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농어촌민박 미신고 숙박 운영 관리**

신고하지 않은 초과 객실 운영 조치와 관련해서는 불법·편법 숙박 운영에 대한 처리 규정 및 조치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담당부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 민박 미신고 숙박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농어촌민박사업자 거주요건 등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남

양주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농어촌민박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조사를 통해 고발 등의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34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건설공사 특허공법 선정절차 미흡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는 특허로 등록된 특정 공법을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공사에 적용한 특허공법 개요 “생략”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 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2021. 4. 1. 시행, 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4장 제3절 2. 다. 2) 신기술·특허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에 따르면 사업부서는 신기술이나 특허 공법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별표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하 “특허 공법 선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공법을 선정하고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허 공법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은 신기술·특허 공법이 적용된 공사의 추정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특허 공법 선정 안내 공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특허 공법을 공사설계에 반영하려면 특허 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와 관련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법의 선정 절차를 안내하는 공고를 하고, 공법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등 일련의 공정한 절차를 거쳐 특정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 착수하여 20××.×.×. 완료하였다.

그리고 가과는 위 설계용역을 진행하면서 20××.×.×. 남양주시 다과에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sup>62)</sup>에 따라 강관거더 형식의 인도교(연장 45m, 폭원 3.5m)를 설치하기 위하여 4가지 특정공법<sup>63)</sup>에 대한 개요, 구조안전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직접공사비 등을 비교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기술자문과 특정공법 심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다과는 20××.×.×.부터 20××.×.×.까지 제×회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요청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고, 가격평가와 기술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ㄱ교(특허 제10-××××)를 ▲▲공사에 적용할 특정 공법으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가과는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 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공법

62)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건설공사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용역 수행단계에서 기술자문요청서에 공사설명서, 설계도면 또는 설계설명서, 사전 자체 심사자료,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그 밖에 설계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63) ㄱ교(특허 제10-××××), ㄴ교(특허 제10-××××), ㄷ교(특허 제10-××××), ㄹ교(특허 제10-××××)

선정 절차를 공고하지 아니하여 해당 공정에 신기술·특허공법을 보유한 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였고, 공정한 공법선정을 위하여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등 특정 공법 선정절차를 미흡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가과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공법선정 공모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여 행정의 신뢰와 공정성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계약집행기준을 반영한 「남양주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세부기준」<sup>64)</sup>의 경과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업무 미숙으로 과거 기준과 이전 서류를 답습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특정 공법 심의 등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건설공사의 특정공법 선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등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6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5호)제4장 제한입찰 운영 요령 중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준 신설(별표2)에 따라 공법 선정절차,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내부 규정

일련번호	35	감사자	☆급 〇〇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계획 준수 확인 등 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는 7개보수공사 등 〇건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 2.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계획 준수 확인 소홀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 원 이하로서 도급 금액이 7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노무비 중 일정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항에 따르면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9조 제4호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아래의 [표]와 같이 ㄱ개보수공사 등 ○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건설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직접 시공 및 하도급계약 공사내역, 법정비율 이상의 직접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를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청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설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하여야 한다.

### [표]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 위반 건설사업자 현황 “생략”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는 20××. ×. ×. ●●●와 ‘ㄱ개보수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20××. ×. ××. ■■■과 ‘ㄴ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과 ■■■(이하 “도급자”라 한다.)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도급자에게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도급자로부터 제출받은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계약 공사내역, 법정비율 이상의 직접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를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또한 도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99조 제4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3.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계약 관리 소홀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5호에 따르면 하도급계약 통보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위의 [표]와 같이 건설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기한 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5호에 따라 건설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ㄱ개보수공사’의 도급자인 ●●●이 20××. ×. ××. ▲▲▲와 상하수도설비공정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개월이 지난 20××. ×. ×. 발주청에 위 계약을 통보하였고, ‘ㄴ사업’의 도급자인 ■■■이 20××. ×. ×. ◎◎◎과 하수도공정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개월이 지난 20××. ×. ×. 발주청에 위 계약을 통보하였다면, 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5호를 위반한 ●●●과 ■■■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앞으로, 건설공사 추진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2항 및 제29조 제6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정)

- 하도급 관리를 소홀히 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를 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36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전력시설물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분리발주 미준수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는 ㄱ공사의 감리자 선정을 위해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sup>65)</sup>용역(이하 “나용역”이라 한다)을 20××. ×. ×. 발주하였다.

[표] ㄱ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개요 “생략”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 중 2억 2천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공사감리 용역명, 예산 규모, 입찰 예정시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발주자는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 또는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 전문기술자<sup>66)</sup>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6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이거나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해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라 시행하려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용역금액이 2억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ㄴ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20××. ×. ×.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 ×.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용역사업자 선정방법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 20××. ×.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채택되었다.

그리고 가과는 20××. ×. ×.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에 ㄴ용역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20××. ×. ×. 위 계약심의위원회로부터 원안가결로 심의되어 20××. ×. ×. 나과에 ㄴ용역의 계약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라 ㄴ용역 중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용역의 추정금액이 약 ☆억 ☆천만 원이었는데도 토목공사의 감리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지 아니하고 토목분야와 전력(전기)분야를 통합하여 도급예정액 ☆☆억 원 규모의 ㄴ용역을 발주하고 20××. ×. ×. 위 용역에 착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전력시설물 공사감리가 하도급에 따른 저가 수주로 인해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분리발주를 명문화한 「전력기술관리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 조항이 2023. 11. 16. 시행되었기 때문에 ㄴ용역을 추진할 당시 분리발주 대상이 아니었으나, 관련 절차를 거치면서 위 용역의 계약을 나과에 의뢰한 20××. ×. ×.에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이 미숙하여 토목분야와 전기분야를 통합하여 발주하였다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업무연찬과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용역의 분리발주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앞으로,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을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해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3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37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는 관내 기반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맞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실시계획 인가(변경) 업무를 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하고 대도시 시장은 위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30조 제1항 및 제3항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대도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5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이 50퍼센트 미만이고,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인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8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 따르면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88조 제6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은 실시계획이 작성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시·군의 공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고, 국토계획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는 국토계획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그 시설사업의 대상인 도시·군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하거나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와 함께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23. ○○. ○○. ●●●로부터 도시·군계획시설(체육시설)인 ㄱ골프장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4. ○. ○○. ●●●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체육시설, 관리도로, 복원녹지 등 세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이를 남양주시 고시 제 2024-●●호로 고시하였다.

그런데, ●●●가 국토계획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서에 도시·군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변경)을 누락하였는데도, 가과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2024. ○. ○.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결정 내용을 누락하고 실시계획(변경)을 인가·고시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그 결과 도시행정의 신뢰성 및 사회적 형평성을 훼손하였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위 ㄱ의 실시계획 인가(변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를 인지하지 못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면서 ㄱ의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결정·고시 등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겠으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시의 개발·정비와 보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남양주시 고시 제2024-●●호(2024. ○. ○○.)로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38	감사자	☆급 〇〇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주의요구

제 목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는 남양주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업무와 시의 개발·정비와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업무를 하였다.

[표 1] 2035년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현황 “생략”

### 2. 도시기본계획 수립 업무 소홀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470호, 2021. 12. 30. 시행, 이하 “기본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 제4장 제7절 4-7-5.는 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

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을 예측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 제2절 5-3-2. 및 5-4-1.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입안된 도시·군기본계획(안)을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신청된 도시·군기본계획(안)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기본계획수립지침 제5장 제2절 5-3-4.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면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신청 공문, 공청회 시 도시·군기본계획보고서(안) 및 구상도(안), 도시·군기본계획(안), 최근 도시·군관리계획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본계획수립지침 [별첨 2] 도시기본구상도 작성기준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표시범위는 도시·군관리계획상 시설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기본계획 내용의 중요도에 기준을 두어 기반시설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주요시설만 표시하고, 도시기본구상도의 표시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원지, 운동장, 대학,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로, 철도 등의 주요시설을 도시기본구상도에 표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수립지침 제4장 제7절 4-7-5.에 따라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량을 예측하고 처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 처리하려는 폐기물의 성상 및 용량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이를 도시기본구상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21. ○. ○○. ‘2035년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면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폐기물 종류, 재활용률 등 폐기물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으로 ●●●와 ■■■만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는데, [표 2]와 같이 이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주요시설로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구상도에 누락하고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본계획을 부실하게 수립

하였다.

**[표 2] 2035년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미반영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현황 “생략”**

그 결과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종합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이 부실한 기반시설 현황 자료를 토대로 수립되어 부문별 계획 간의 정합성과 연계성이 부족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우려를 낳게 하였다.

### 3. 도시관리계획 입안 업무 소홀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국토계획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대도시 시장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2018. 12. 21. 시행, 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 1-5-3-2. (5)는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공원·유원지에 대하여 ①10만㎡ 이상의 규모의 공원을 개발허용 기준면적 비율이 낮은 쪽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경우, ②10만㎡ 이하 규모의 공원을 신설(확장을 포함한다)하거나 2만㎡ 이하 규모의 공원을 해제(축소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100만㎡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으로서 해당시설 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확장하거나 20만㎡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으로서 해당시설 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축소하기 위하여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또는 유원지 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축소 또는 확장을 위하여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다만, 10퍼센트 범위내라도 해제규모가 5만㎡ 이상인 근린·체육공원 및 유원지와 10만㎡ 이상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 이 경우 분할 시행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한다.), ④당해 시설의 변경이 축소와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 크게 조정되는 측이 ③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내

에서의 면적조정(다만, 축소와 확장의 면적이 같을 경우에는 축소변경기준에 따른다.)에 한정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5-3-2 (7)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자동실효를 대비하여 불가피하게 미리 해제하는 경우에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는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시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어 시설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도 관리계획수립지침 1-5-3-2. (5) 단서 규정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미리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남양주시 가과는 2019. ○. ○○.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인 ▲▲▲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군관리계획을 가과에 입안 신청하였고, 가과는 입안 신청된 도시·군관리계획이 ‘2020년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거나 관리계획수립지침 1-5-3-2. (5)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국토계획법 제25조 제1항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나과에서 신청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였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2019. ○. ○○. [표 3]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을 폐지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 [표 3]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주요내용 “생략”

그 결과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 간의 위계와 정합성을 저해시키고, 도시행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기존 시설의 현황 관리가 미비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시 관련 규정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가 미흡하였던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남양주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체계적인 공간계획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39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과, 다과, 라과, 마과, 바과, 사과 (아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과, 다과, 라과, 마과, 바과, 사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아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 나과, 다과, 라과, 마과, 바과, 사과(이하 “가과 등” 이라 한다)는 7 사업 등 ○○건의 건설공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별지의 [별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 승인 및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선임 현황” 과 같이 품질관리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 2.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심사 및 승인 등 절차 미이행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건설사업자 등” 이라 한다)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

고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 9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 등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 등은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발주하고, 건설사업자 등은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착공 전에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가과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과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에 따라 그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등은 관내 건설공사 ○○건 중 ○○건의 건설사업자가 품질시험계획서를 가과 등에 제출하였으나 그 적정성 등을 심사하거나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았으며, 28건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가과 등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하게 하였다.

그 결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를 낳게 하였다.

### 3. 건설공사 품질시험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 여부 확인 미이행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 등은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 등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표]와 같다고 되어 있다.

#### [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생략”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별점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 기준, 불이익 내용, 별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별점관리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 등은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등은 관내 건설공사 <<건 중 ●●건의 건설사업자가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을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담당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건설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건설공사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를 낳게 하였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 등은 품질시험계획의 심사 및 승인, 건설기술인 선임 여부 확인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향후 관련 법령 및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앞으로, 건설공사 추진 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품질시험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지]

[별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 승인 및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선임 현황 “생략”

일련번호	40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업무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물환경보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2조 제3항에 따르면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환경부 산업폐수 분야 질의회신 사례집(2020. 12.)<sup>67)</sup>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이 양도된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6조에 따라 양수인이 폐수배출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수인이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

67) 2020. 12. 산업폐수 분야 질의회신 사례집 12p 1-1-1. 허가신고 4. 폐수배출시설 소유권 이전 시 권리의무승계 절차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미 이루어진 처분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권 취소를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기도 종합감사 기간(20××. ×. ×. ~ 20××. ×. ××.) 내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기업 대표자 ○○○(이하 “○○○”라 한다)는 20××. ×. ×. 사업자 등록을 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가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대표자 변경 신고 요청을 몇 차례 받은 후 20××. ×. ××. 위반확인서 확인(서명)을 통해 본인이 □□기업 폐수배출시설 대표자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가과는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을 사유로 ○○○에게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였고, 20××. ×. ××. 행정처분(경고)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에서 □□기업은 어떤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는 바, 같은 해 ×. ××. 과태료 부과를 확정하였다.

그런데 가과는 과태료 부과 이후, ○○○가 구두로 자신은 폐수배출시설의 대표자가 아니며 양도·양수계약서가 없다는 진술을 하자, 「물환경보전법」 관련 환경부의 질의회신 사례와 ○○○가 해당 시설의 대표자로서 행정 서류를 가과에 제출했던 사실 등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신고 의무가 양도인에게만 있다고 검토하여 행정 처분을 직권 취소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후 [표]와 같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 [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직권 취소 현황 “생략”

그 결과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이 면밀한 검토 없이 직권 취소되어 행정의 신뢰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행정처분이 이뤄졌으나, 배출시설 양도·양수 서류가 없고 당사자도 위 관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당사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직권 취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기업(대표자 △△△)은 20××. ××. ××. 법인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고 ○○기업이 20××. ××. ××. 해산 등기된 점, ②○○○가 □□기업 명의로 20××. ×. ×.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취하원, 의견제출서 등의 행정 서류를 대표자 ○○○로 표시하여 가과에 제출한 점, ③폐수 무단방류 사건에 관하여 ○○기업 공동방지시설 대표자(피의자)로 ○○○가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은 점, ④20××. ×. ××. 대표자 변경 신고 미이행 위반확인서를 받을 때 ○○○가 폐수배출시설 실제 대표자(운영자)임을 인정한 점, ⑤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직권 취소가 정당하였다면 변경신고 의무를 가진 ○○기업(대표자 △△△)에게 대표자 변경사유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대표자 변경 신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을 부당 취소한 아래 관련자를 「남양주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41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sup>68)</sup>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6]

68)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의 허가·신고,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2.-가.-1)에 따르면 법 제23조에 다른 허가(신고 수리)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이면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2.-가.-3)에 따르면 법 제8조 제1항에 다른 허가(신고 수리)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에는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배출되는 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는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번 감사에서는 20××. ×. ×. ~ 20××. ×. ××. 기간 중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장 ●●개소의 행정처분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그중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기업 등 ●개 사업장(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과는 진접읍 및 화도읍 다과(이하 “다과”라고 한다)와 라과 등 관련 부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 가능여부 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표]와 같이 다과는 해당 사업장 건축물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으로 변경<sup>69)</sup>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라과는 해당 용도지역의 경우 건축물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 시 관련 조례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거나 용도변경에 따른 재협의를 필요하다 등의 취지로 회신하였다.

#### [표] 배출시설 행정처분 부적정 사업장 현황 “생략”

그런데 □□기업 등의 소재지가 공장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 등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관련 부서에서 회신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과는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출시설의 폐쇄 명령을 하였다.

그 결과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건에 맞지 않는 폐쇄명령을 함으로써 □□기업 등의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추후 관련 업무처리 시 관련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행정처분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남양주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69)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이고, 공장은 물품 제조·가공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로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임

- 앞으로, 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 대상 사업장을 폐쇄명령으로 행정처분하지 않도록 관련법 검토 등 해당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42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과 (다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배출시설 멸실 및 폐업 사업장 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다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남양주시 나과(이하 “나과” 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폐수배출시설 멸실 및 폐업 사업장 관리 소홀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sup>70)</sup>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물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뒤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70) 「물환경보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

또한 같은 법 제72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sup>71)</sup>는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청문 절차를 거쳐 폐수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검토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의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 사업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업 등 ●●개소 사업장이 폐쇄명령 대상임을 확인하였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자 하는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폐수배출시설 멸실 및 폐업 사업장 관리 업무의 공정성 및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 3. 대기배출시설 멸실 및 폐업 사업장 관리 소홀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sup>72)</sup>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르면 제2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71)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1,2종 배출시설 및 산업단지 내 설치된 배출시설 등을 제외하고 폐수배출 시설 허가·신고,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권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7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권한 시장·군수에게 위임

나과는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 사업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업 등 ●●개소 사업장이 폐쇄명령 대상임을 확인하였는 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자 하는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대기배출시설 멸실 및 폐업 사업장 관리 업무의 공정성 및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 가. 폐수배출시설 멸실 및 폐업 사업장 관리 소홀

가과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물환경보전법」 제4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나. 대기배출시설 멸실 및 폐업 사업장 관리 소홀

나과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검토 후 폐쇄명령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폐수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 멸실 및 폐업 사업장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43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sup>73)</sup>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초과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sup>74)</sup>에 따라 산출한 금액(처리부과금)에 사업장 규모별(종별)<sup>75)</sup> 정액부과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및 [별표 14]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유기물질 초과부과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

73) 「물환경보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1,2종 배출시설 및 산업단지 내 설치된 배출시설 등을 제외하고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74) 처리부과금 :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75) 사업장 정액부과금 : 제1종 400만 원, 제2종 300만 원, 제3종 200만 원, 제4종 100만 원, 제5종 50만 원

량(BOD)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으로 측정된 경우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250원이고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측정된 경우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450원으로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6항에 따르면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합계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수질 배출부과금 업무편람(환경부, 2024. 2.)에 따르면 사업장별 배출량 등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서 정한 사업장별 부담 비율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기업의 유기물질 초과부과금을 산정할 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가 아닌 1킬로그램당 부과 금액이 더 높은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산정하여야 했고, 사업장별 배출량 등을 산정할 수 없는 ○○기업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할 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 정한 사업장별 부담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처리부과금)에 사업장별로 규모별 정액부과금을 더한 금액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0××년부터 20××. ×. ××.까지 총 ●●건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가과는 [표]와 같이 □□기업은 유기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초과배출부과금 ◇◇◇,◇◇◇원을 과소 부과·징수하였고 ○○기업 공동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부담 비율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기업 등 ●개 사업장을 누락 부과하여 초과배출부과금 ◇,◇◇◇,◇◇◇원을 과소 부과·징수하였다.

#### [표]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부적정 현황 “생략”

그 결과 초과배출부과금을 과소 부과·징수하면서 배출부과금 업무의 공정성 및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지적된 사항을 수용하면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을 정정 부과를 감사기간에 완료(20××. ×. ××.)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앞으로,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44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추징	재정상 조치금액	16,200,00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과 (다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수료 사업장 과태료 부과 미이행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다관)

**내 용**

### 1. 수질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수료 사업장 과태료 부과 미이행

#### 가.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받은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나.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물환경보전법」 제47조 및 제67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하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sup>76)</sup>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sup>77)</sup>을 받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환경보전법」 제82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사업장별 환경기술인 교육 수료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7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교육 업무를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

77) 최초교육 : 기술인력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보수교육 :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

##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한국환경보전원(구.환경보전협회, 2023. 6. 국가 출연기관 설립)으로부터 통보된 20××년 환경기술인 교육 수료 명단을 확인한 후 환경기술인 교육 미수료 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운영여부 등의 교육 미수료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고 [표 1]와 같이 정상 운영 중인 □□기업 등 ●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총 ◇,◇◇◇천 원) 부과를 하지 않았다.

### [표 1] 환경기술인 교육 미수료 과태료 미부과 현황 “생략”

그 결과 수질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수료 사업장 과태료를 적기에 부과하지 못 하였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환경기술인의 관심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과태료 부과 업무와 관련된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대기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수료 사업장 과태료 부과 미이행

### 가. 업무 개요

남양주시 나과(이하 “나과” 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받은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나.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제77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하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sup>78)</sup>이 실시하는 교육<sup>79)</sup>을 받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4항 제8호에 따르면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과는 사업장별 환경기술인 교육 수료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을 받지 않은 사업

7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

79)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다.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나과는 한국환경보전원(구.환경보전협회, 2023. 6. 국가 출연기관 설립)으로부터 통보된 20××년, 20××년, 20××년 환경기술인 교육수료 명단을 확인한 후 환경기술인 교육 미수료 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운영여부 등의 교육 미수료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고 [표 2]와 같이 ○○기업 등 ●●개 사업장에 과태료(총 16,200천 원) 부과를 하지 않았다.

#### [표 2] 환경기술인 교육 미수료 과태료 미부과 현황 “생략”

그 결과 대기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수료 사업장 과태료 부과 규정이 무력화되었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환경기술인의 관심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동일하게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사업자 중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와의 형평성이 훼손되었다.

### 3. 관련자 주장 및 판단

#### 가. 수질환경기술인 교육 미수료 사업장 과태료 부과 미이행

가과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감사 지적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나. 대기환경기술인 교육 미수료 사업장 과태료 부과 미이행

나과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감사 지적 사업장에 대하여 검토 후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대기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수료 사업장 ●●개소에 과태료 총 16,200,000원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45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추징	재정상 조치금액	21,186,72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시정요구

**제 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누락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하수도법」 제61조 및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m<sup>3</sup>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 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라 한다)를 부담 시킬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며 남양주시가 공고한 오수량 1m<sup>3</sup>/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sup>80)</sup>을 곱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르면 세차시

80)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24-108호)」에 따라 오수발생량 산정

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1일 폐수배출량을 별도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발생량 산정 시 세차시설에서 발생하는 1일 폐수발생량을 오수발생량에 포함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의 20××년부터 20××년 ×월 ××일까지 총 ●●●건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세차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기업 등 ●개소에 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 [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누락내역 “생략”

그 결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를 누락하면서 원인자부담금 업무의 공정성 및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지적된 사항을 수용하면서 추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관리하겠으며, ○○기업의 경우 허가일이 20××. ×. ××.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 명시한 부과의 제척기간(5년) 경과로 현시점에서 부과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과 의견과 같이 ○○기업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시효가 소멸하였으므로 □□기업에 대해서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를 누락한 ●건 총 21,186,720원을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46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나과 (가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건축허가 등을 위한 현장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소홀 등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나과(이하 “나과” 라 한다)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이하 “현장확인 업무” 라 한다)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지급 하고 있고, 「건축법」에 따라 「남양주시 건축 조례」(이하 “건축 조례” 라 한다)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축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확인 업무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 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및 가설건축물 허가, 용도변경 허가를 위한 현장확인 업무는 그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확인 업무는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축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수수료의 청구·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남양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장확인 업무를 대행한 자는 시장에게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이 사용승인된 때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매 분기마다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 사용승인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건축사 별로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균등 분할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건축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규칙은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과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가설건축물 허가, 용도변경 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확인 업무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현장확인 업무를 대행한 자가 당해 건축물이 사용승인된 때 수수료를 청구하면 지급하여야하고, 수수료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건축사 별로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경우 위임 사항에 대해 건축 조례와 시행규칙을 정비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 기간인 2021. 1. 1.부터 2024. 6. 30.까지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나과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등에 대해 7,836건의 현장확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면서, 청구된 사용승인 현장확인 업무 2,312건(29.5%)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용승인을 제외한 건축허가, 신고 등을 위한 현장확인 업무 수수료 5,456건(69.62%)<sup>81)</sup>

을 지급하지 않았다.

**[표 1] 현장확인 업무 수수료 지급 현황 (2021년 ~ 2024년): “생략”**

또한 [표 2]와 같이 현장확인 업무 수수료 지급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50백만 원, 2024년 245백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2021년 163백만 원(47%), 2022년 179백만 원(51%), 2023년 193백만 원(55%)의 예산을 반납하면서, 수수료 청구가 없는 경우에 매년 말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사별로 지급하여야 하는 현장확인 업무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표 2] 현장확인 업무 수수료 지급 예산: “생략”**

그리고 나과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현장확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건축 조례와 시행규칙을 운영하면서 [별표] “「남양주시 건축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현황” 과 같이 2020. 5. 14. 건축 조례 제21조를 개정할 때 건축허가, 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및 가설건축물의 허가, 용도변경허가, 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 등을 위한 현장확인 업무 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시행규칙은 1995. 1. 3. 제정한 이후 현장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청구 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지 않아 건축허가, 신고 등을 위한 현장확인 업무 수수료를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나과는 수수료 청구가 없는 경우에 매년 말 지급하여야 하는 현장확인 업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현장확인 업무를 대행한 시기에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시행규칙을 운영하고 있어 건축사 업무 대가를 일부 지급하지 않아 건축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나과는 건축법령에서 현장확인 업무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절차를

---

81) 현장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청구가 지연되거나 연말에 청구된 수수료는 다음 연도 지급되어 68건(0.11%)의 차이 발생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남양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으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된 때 수수료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내 다른 시·군의 수수료 지급 현황을 확인하여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앞으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남양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현장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시기 바라며, (주의)
- 건축허가 등을 위한 현장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가 적정한 시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남양주시 건축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현황: “생략”

일련번호	47	감사자	○○○○☆급 ○○○		공 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나과, 다과, 라관 (가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훈계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공용건축물 우수유출저감대책 미수립 등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과, 다과, 라관)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나과, 다과(이하 “나과 등” 이라 한다)는 공용건축물 건축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남양주시 라관<sup>82)</sup>(이하 “라관” 이라 한다)은 공용건축물 건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에 대한 건축 협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저감대책<sup>83)</sup>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sup>84)</sup>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르면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건축 협의<sup>85)</sup>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

82) 2020. ××. ××. 조직개편으로 마관에서 라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용건축물 건축의 우수유출저감에 대한 건축협의 부서를 라관으로 통일

83)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 1-1-3-2)에 따르면 우수유출저감대책은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여 우수의 저류·침투 기능이 저하되고, 우수가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되어 도심지의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 우수유출영향을 분석하여 저류시설과 침투시설 대책을 마련하는 것임

8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임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사업(이하 “공용건축물 건축”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과 등은 공용건축물 건축사업을 시행할 때에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라관은 공용건축물의 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의 건축 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나과 등은 [표]와 같이 공용건축물 건축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

#### [표] 우수유출저감대책·시설 계획 미수립·미설치 현황: “생략”

라관은 나과 등이 추진하는 공용건축물 건축사업이 「자연재해대책법」의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인데도 이에 대한 협의의견을 “의견없음”으로 회신하여 해당 공용건축물의 우수유출저감대책이 미수립되었고, 우수유출저감시설도 설치되지 않았다.

그 결과 나과 등 및 라관은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 취지를 저해하고, 도심지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저류시설과 침투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나과는 “0000 조성사업” 추진 당시인 20××. ××.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85)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가 반영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과와 라관은 이번 감사 결과를 인정하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공용건축물 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대한 검토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남양주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공용건축물의 건축사업 추진 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주의**)
  
- 우수유출저감대책을 미수립한 공용건축물 OO건에 대해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48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나과 (가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건축(개축) 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나과(이하 “나과” 라 한다)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신고 및 사용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개축) 신고<sup>86)</sup>(이하 “개축 신고” 라고 한다) 및 사용승인 검사 업무를 처리하였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sup>87)</sup>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 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3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

86)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은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87)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및 「남양주시 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14조 제2호에 따라 개축<sup>88)</sup>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질의회신<sup>89)</sup>에 따르면 건축 당시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되었으나 법령의 제·개정 등의 사유로 현행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개축은 현행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sup>90)</sup>에 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예외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나과는 개축 신고가 접수되면 개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현행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신고 수리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나과는 [표]와 같이 □□가 2021. ××. ××. 신청한 ㄱ동 000번지 상의 ‘개축 신고’ 건에 대하여 2021. ××. ××. 신고 수리하고 2022. ××. ××. 사용승인 처리하였다.

#### [표] ㄱ동 000번지 개축 신고 현황: “생략”

그런데 개축 신고 대상지는 [그림 1]과 같이 ㄱ동 0000번 등 건축물이 있는 대지 4필지에만 접해 있을 뿐 도로에 접해 있지 않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

88) “개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89) 2011. 12. 27.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00. 10. 5. (서울시건지 58550-3314)

90) “도로”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및 예정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현행 법령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과는 소유자가 같은 인접대지에 통행시설을 설치한 이유만으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하고 신청지에 개축 신고를 수리하였다.

그 결과 별지의 “ㄱ동 000번지 진출입 계획도”와 같이 도로에 접하지 않고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수 없는 대지인 000번지의 단독주택을 건축(개축) 신고 수리하여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을 허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그림 1] 배치도, 현장사진 및 현황실측도: “생략”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나과에서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검토하여 적합하게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ㄱ동 000번지에 있던 기존 건축물(단독주택)은 1960년에 사용승인되어 도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고 당시 통행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었으나 이후 주변 토지의 합병 및 인근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해 현황 도로가 변경된 상황이기 때문에 ㄱ동 000번지 개축을 위해 동일 소유주의 인접대지인 ㄱ동 0000번지를 경유하여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그림 2]와 같이 시설물을 설치하여 출입을 계획하였기 때문에 허가권자로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신고 수리하였다고 한다.

#### [그림 2] ㄱ동 000번지 진출입 현장사진: “생략”

그리고 이와 같은 노후 주택들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개축 허가를 할 수 없다면 소극 행정으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토지 소유주는 □□로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토지 분할이나 소유권 변동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ㄱ동 000번지와 0000번지는 현재 ㄱ동 0000번지로 토지대장이 합병<sup>91)</sup>되었기 때문에 나과에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91) 2022. ××. ××. 토지합병: ㄱ동 000번지와 ㄱ동 0000번지가 합병되어 ㄱ동 0000번지로 변경

그러나 1960년도에 사용승인 된 ㄱ동 000번지의 기존 건축물의 개축 신고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4조 제3항과 같이 현행 법령의 도로규정에 맞아야 하고, 허가권자로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 하여 신고 수리하려면 건축법령에서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를 규정한 취지인 건축물의 이용자에게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제공하기 위한 통로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인접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다는 것만으로 보행자 및 자동차 등의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노후 주택의 개축 신고는 건축법령에 적법한 경우 처리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에서 감사 기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지가 현황도로에 포함 되거나 인접한 경우에도 도로공고<sup>92)</sup>를 통해 출입계획을 확보하여 신고 수리한 3건<sup>93)</sup>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토지대장 합병으로 나과에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정리할 수 있다는 의견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는 사항으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나과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건축신고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남양주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처리 시 「건축법」에 따른 도로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9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에 따라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93) 세움터 자료 3건: '21-나과-00, '23-나과-00, '23-나과-00

[별지]

그동 000번지 진출입 계획도: “생략”

일련번호	49	감사자	○○○○☆급 ○○○		공 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나과 (가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건축(증축) 신고에 따른 부설주차장 확보 검토 소홀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나과(이하 “나과” 라 한다)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sup>94</sup>허가·신고 및 사용 승인 업무와 「주차장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용도의 건축(증축) 신고(이하 “증축 신고” 라고 한다) 업무를 처리하였다.

#### [표 1] 증축 신고 처리현황: “생략”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축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 규칙” 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합치려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신청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94)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그리고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건축물에 종교집회장(사찰)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및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남양주시 관리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별표 1] 및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19조 제1항 [별표 7]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20㎡ 당 1대의 주차대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비교 제2호에 따르면 주차대수 산정을 위한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고, 제4호에 따르면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sup>95)</sup>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sup>96)</sup>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하며, 제5호에 따르면 시설물을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sup>97)</sup>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과는 건축물의 증축을 통해 둘 이상의 건물이 합쳐지는 증축 신고의 건축물대장 결합신청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의 변동내역 및 원인<sup>98)</sup>을 확인하여 각 시설면적 용도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이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95) 단독주택 시설면적이 50㎡ 이하인 경우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로 나눈 대수

96)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 비교 제6호에 따라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이면 이를 1로 본다.

97) 2회 이상 증축하는 경우: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

98)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11호 서식]에 따라 변동사항(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을 기재하고 있음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나과는 □□가 신청한 [표 2]와 같은 ㄱ동 현) 0000번지<sup>99)</sup> 상의 증축 신고를 2024. ××. ××. 접수받아 2024. ××. ××. 증축 신고를 수리하였다.

#### [표 2] 증축 신고 상세 현황: “생략”

그런데 [그림]과 같이 ‘ㄱ동 구) 0000번지’와 ‘ㄱ동 구) 000번지’에 있는 각 건축물의 증축을 통해 둘 이상의 건물이 합쳐지는 증축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규칙 제13조에 따라 건축물대장 결합에 대한 신청서와 설계도서가 첨부되어야 하나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그림] 건축물대장 배치도 및 증축 신고 배치도: “생략”

또한 ㄱ동 현) 0000번지로 건축물대장을 결합하여 증축되면 부설주차장은 [표 3]과 같이 기존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 1.17대, 증축되는 건축물의 시설면적에 따른 0.24대를 합산하여 1.41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나과는 기존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변동내역 및 각 대지의 건축물대장 결합 사실을 확인 하지 못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의 시설면적 8.34㎡ 증가에 따른 주차대수만 검토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필요 없는 건축물로 판단하였다.

#### [표 3]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산정: “생략”

그 결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1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증축 신고가 수리되어 도시내 자동차교통의 원활을 기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하는 주차장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나과 증축 신고 담당자는 증축 신고를 수리하면서 건축물대장 결합을 위한 신청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배치도 및 건축개요를 작성한 설계도서에 두 개의 대지가 결합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결합에 대한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증축 수리하였

99) 남양주시 다과-○○(2022. ××. ××.)호에 따라 ㄱ동 구)○○○○번지와 구)○○○번지가 합병되어 현)○○○○번지로 변경

고, 각각의 행정절차인데도 신청서를 받지 않아 누락된 부분이 발생한 점과 협의서류를 미비하게 보낸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나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검토 업무 담당자는 경험과 법령인지가 미숙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건축물대장 결합과 용도 확인을 오판단하여 검토가 누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법령을 숙지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건축 신고 처리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검토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남양주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건축 신고 처리 시 「건축법」에 따른 도로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50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시정요구

**제 목**            **멸실·훼손된 지적기준점표지 조치 소홀**

**소 관 기 관**    남양주시 (가과)

**조 치 기 관**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측량기준점<sup>100)</sup> 중 지적기준점<sup>101)</sup> 표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공간정보관리법 제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측량기준점 표지를 이전·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측량기준점 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을 신청하고, 이전에 드는 비용을 부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도로·상하수도·전화 및 전기시설 등의 공

100)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으로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을 말함

101)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을 말하며, 지적기준점의 종류에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음

사로 지적기준점이 멸실·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공사시행자와 공사 착수 전에 지적기준점의 이전·재설치 또는 보수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적기준점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 관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고,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기준점표지의 망실을 확인하였거나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적측량 시행규칙」제2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고,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기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고,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과는 지적기준점 표지의 이상 유무 조사 결과 관리 중인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훼손되었을 때에는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2020년 ~ 2023년 지적기준점표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표 1]과 같이 연간 274점(4년치 평균치)이 멸실·훼손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전·재설치 또는 보수를 위한 공사시행자 확인 및 보존할 필요가 있는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일괄 폐기한 사실이 있다.

#### [표 1] 2020년 ~ 2023년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표지 조사·조치 결과 “생략”

또한, 이번 남양주시 종합감사 감사기간 중 2023년 멸실·훼손된 것으로 조사된 지적기준점 중 일부를 가과와 합동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동에 설치된 000번 지적도근점 등 10개 점은 [표 2]와 같이 측량에 활용하고 있는 기준점으로 재설치 필요가 있는데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2] 지적도근점 합동 표본조사 결과: “생략”

그 결과 지적기준점표지 관리 부실로 원활한 측량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추후 지적측량업무의 기초가 되는 지적기준점인 만큼 망실된 지적기준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설치 필요시 예산수립 등을 통하여 지적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표지에 대한 사후 조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 [표 2]로 확인된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표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51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망실·훼손된 주소정보시설 조치 소홀  
소 관 기 관 남양주시 (가과)  
조 치 기 관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하여 도로명주소<sup>102)</sup> 운영을 위해 주소정보시설<sup>103)</sup>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제13조에 따르면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법」 제26조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 조사계

102)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는 주소

103)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함

획을 수립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교체 또는 철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남양주시 가과는 관내 내 설치되어 있는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사계획을 수립 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교체 또는 철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남양주시 가과는 2020 ~ 2024년 매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해 망실·훼손 등의 원인으로 부적정<sup>104)</sup> 주소정보시설을 확인하였음에도 확인된 주소정보시설 중 2% ~ 51% 일부만 조치한 사실이 있다.

#### [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결과 및 유지보수 현황 “생략”

그 결과, 별지의 [별표] “망실·훼손 등 부적정 주소정보시설 미조치 현황” 과 같이 1,081개의 주소정보시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적정 상태로 확인되고도 감사일 현재까지(2024. 9. 23. 기준) 조치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관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그간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인해 망실·훼손된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미조치 사실을 인정하며, 예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은 40,000천 원을 증액하여 100,000천 원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망실·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이 적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히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104) 망실, 훼손, 설치위치 오류, 시인성, 표기내용 오류 등

- 앞으로, 망실·훼손된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라 부적정 상태로 확인되고 장시간 조치되지 않은 별지의 [별표] “망실·훼손 등 부적정 주소정보시설 미조치 현황”의 1,081개의 주소정보시설물은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망실·훼손 등 부적정 주소정보시설 미조치 현황: “생략”

일련번호	52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다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설정 확인 및 행정처분 소홀

소 관 기 관 남양주시 (가과, 다과)

조 치 기 관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시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 설정 확인 업무를 하고 있으며, 다과는 보증보험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개업공인중개사<sup>105)</sup>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

105)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한 자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sup>106)</sup>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보증보험을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남양주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보증보험을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 없이 업무를 개시한 것이 확인된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남양주시 가과는 개설등록을 한 자가 보증보험을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 [표]와 같이 0000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A 및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B에게 8일 ~ 9일간 보증 없이 업무를 개시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다.

#### [표] 보증 가입 지연 및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검토 현황: “생략”

그리고 다과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없이 [표]의 0000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에 대한 조치를 누락한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보증보험 가입 없이 편법으로 업무를 개시 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실하게 법령을 준수하는 공인중개사와 비교하여 공정성·형평성이 저해되고, 중개 과정에서 피해 발생 시 배상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으로 판단하고 등록증 교부 후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106)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하였으며, 추후 가입 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증보험 가입 확인에 주의를 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과는 개설등록일과 보증설정일 간의 차이가 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 검토하고 실제 보증을 설정하기 전에 업무를 개시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설정 확인 등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표]의 0000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2개소는 손해배상책임보험 조치 없이 업무를 개시하였는지 확인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53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남양주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기도 감사위원회

## 훈계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 조사 누락 및 사후조치 부적정 등  
 소관기관(부서) 남양주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남양주시 (나관)  
 내 용

### 1. 업무 개요

남양주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소유권 ·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토지취득일부터 5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이하 “사후이용관리지침” 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 후에 허가를 받아

거래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매년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중인 허가분의 이용실태를 조사(이하 “사후이용실태 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사후이용실태 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토지거래 허가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업시행이 목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납세실적 등 이용목적의 이행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참조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토지를 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아니하여 이행 명령이 시행된 토지의 경우 이행명령의 이행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8조 및 같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1조 따르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후이용관리지침 제7조는 2회 이상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토지이용계획서가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나 허가받은 토지(농지 및 임야 등)를 허가목적과 다르게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하는 경우 등을 벌칙 검토대상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는 매년 1회 이상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허가 외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거나 임대를 한 경우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여 토지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허가 목적과 다르게 임대를 하여 토지이용계획서가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경위를 파악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1]과 같이 2024. ○. ○○. 토지거래허가구역<sup>107)</sup>인 남양주시 ●●동 000(이하 “해당토지”라 한다)의 매수인 A, B(이하 “A 등”이라고 한다)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을 허가하면서, 5년간 종묘배양장을 직접 운영하고 당초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의무기간 중 매년 1회씩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명시하여 통보하였다.

#### [표 1] ●●동 000 토지거래계약 허가 내역: “생략”

##### 가. 사후이용실태 조사 누락 및 사후조치 부적정

가과는 [표 2] 및 [그림 1]과 같이 2021. 10. ○○. 2021년 사후이용실태 현장 조사 결과 해당토지를 종묘배양장으로 이용하지 않고 창고로 임대한 것이 확인되어 2021. 11. ○○. 허가 목적대로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고, 2021. 12.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후 2021. 12. ○○. A 등에게 59,5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 [표 2] 2021년, 2022년 사후이용실태 조사 및 조치 내역: “생략”

#### [그림 1] 허가 당시 및 2021년 사후이용실태 조사 현장 사진: “생략”

그런데 가과는 2021년 사후이용실태 조사 과정에서 허가받은 토지를 허가 목적과

107) 국토교통부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과 관련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8. 12. 26.부터 남양주시 왕숙지구 일원 29km<sup>2</sup>(진접읍(연평·내곡리), 진건읍(신원·진관·사능리), 다산동·일패동·이패동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다르게 임대를 준 사실이 확인 되었음에도 고발 및 수사의뢰를 위한 조치는 누락하였으며, 2022년 사후이용실태 조사 시 해당토지의 조사를 누락하였고, 매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았다.

#### 나. 토지거래허가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사후조치 부적정

가과는 [표 3]과 같이 2023. 9. ○○. 2023년 사후이용실태 조사 시 해당토지를 창고로 임대하고 있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2023. 11. ○○.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종묘배양장으로 직접 운영하라는 이행명령을 한 후 2024. 1.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토지소유자 A이 2024. 1. ○○. “현 시점 임대인과 퇴거 조율 중으로 4~5개월 후 임대 종료 예정, 이후 원복 예정임” 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2024. 1. ○○.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였고, 2024. 3. ○○. 현장 조사 시 [그림 2]와 같이 종묘배양 시설이 설치되어 임대 해소 여부는 미확인 한채 허가 목적대로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중단하였다.

[표 3] 2023년 사후이용실태 조사 및 조치 내역: “생략”

[그림 2] 2023년 사후이용실태 조사 현장 사진: “생략”

그런데 과거 로드뷰를 확인한 결과 해당토지는 [그림 3]과 같이 2021. 4. ○○. 토지거래계약 허가 직후인 2021년 ○월경부터 ‘●●●’ 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고 2023년 8월경 로드뷰에는 ‘▲▲▲’ 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으며, 가과도 2021년 및 2023년 사후이용실태 조사 시 해당토지가 창고로 임대를 준 것이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그림 3]과 같이 감사일 현재(2024. 10. 2.)도 ▲▲▲가 해당토지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3] 카카오맵 로드뷰 및 2024년 10월 현장 사진: “생략”

그러나 가과는 2023 사후이용실태 조사 시 불법 임대가 해소 되었는지 확인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하고 및 고발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A 등이 ●●●에 이어 ▲▲▲에 해당토지를 임대하여 장시간 수익을 얻는 등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목적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관계기관 의견

가과는 팀원 1명이 공석으로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에서 업무처리에 미숙함이 있었다며, 향후 실효성 있는 토지거래허가 제도 운영을 위해 사후이용실태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 조사 및 조치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남양주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 사후이용실태 조사 및 조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이후 허가 목적 외의 용도로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한 A, B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는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